

수시연구과제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2018. 6

홍범교·박수진·홍성희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홍 성 희 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 맥주시장 현황 및 주세제도	11
1. 우리나라 맥주시장 현황	11
가. 국내맥주 제조시장	13
나. 수입맥주시장	13
2. 우리나라 주세제도	23
가. 주세 연혁	23
나. 현행 주세 과세제도	32
다. 주세 징수현황	42
III. 주세율 과세체계 기본개념	46
1. 과세방법	46
가. 균일과세 방식	47
나. 결합과세 방식	51
다. 요약	54
2. 과세방법과 세율결정에 대한 주종별 동질성	55
3. 기타 고려사항	57
가. 최저가격	57
나. 무역협정	59

IV.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61
1. EU	63
가. EU 지침	63
나. EU 회원국별 맥주 주세제도	66
2. 일본	68
가. 맥주시장 현황	68
나. 주세제도	69
3. 호주	82
가. 맥주시장 현황	82
나. 주세제도	83
4. 멕시코	87
가. 맥주시장 현황	87
나. 주세제도	88
5. 터키	90
가. 맥주시장 현황	90
나. 주세제도	92
6. 중국	93
가. 맥주시장 현황	93
나. 주세제도	95
7. 베트남	99
가. 맥주시장 현황	99
나. 주세제도	100
8. 태국	104
가. 맥주시장 현황	104
나. 주세제도	105
9. 기타	108

V. 국제비교	109
1. 조사대상국의 주세정책 동향	109
2. 주세율 과세체계	111
가. 과세방식	111
나. 세율	114
다. 납세의무자	117
라. 맥주 주세 과세표준	118
3. 소결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29

표 목차

〈표 II-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실제 출고량 기준) 현황	12
〈표 II-2〉 주요 맥주 수입국의 관세율 부과 현황	17
〈표 II-3〉 EU 주류 수입량 연도별 현황	18
〈표 II-4〉 중국맥주 수입 연도별 추이	19
〈표 II-5〉 맥주 수입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22
〈표 II-6〉 1991년 세법개정 전후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25
〈표 II-7〉 우리나라 주세율의 변천 현황	28
〈표 II-8〉 교육세 과세대상 주류 및 세율	30
〈표 II-9〉 「주세법」상 주종별 세부정의	33
〈표 II-10〉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	36
〈표 II-11〉 「주세법」상 주세의 세율	37
〈표 II-12〉 소규모 주류생산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40
〈표 II-13〉 주종별 주류 출고량(환산출고량 기준) 및 세액	43
〈표 II-14〉 연도별 우리나라 기타 소비세 중 주세의 비중	45
〈표 III-1〉 균일과세 방식(uniform taxation)에서의 과세방법별 비교	51
〈표 IV-1〉 OECD 회원국의 주세 과세방식 및 맥주 경감세율 적용 현황	62
〈표 IV-2〉 EU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주세 최저한세	65
〈표 IV-3〉 EU 회원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표준세율(2018년 1월 기준)	67
〈표 IV-4〉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분류	70

〈표 IV-5〉 현행 일본 주세율과 예정 변경세율	72
〈표 IV-6〉 일본 1989년 4월 1일 전·후 주세 과세체계	77
〈표 IV-7〉 1989년 전·후 주종별 주세 과세물량 점유율 추이	80
〈표 IV-8〉 1997년 전·후 주종별 주세 과세물량 점유율 추이	81
〈표 IV-9〉 호주의 주류 소비세율	85
〈표 IV-10〉 멕시코 주세율	89
〈표 IV-11〉 터키 주세율	93
〈표 IV-12〉 중국 주세율	98
〈표 IV-13〉 베트남 주세율 개정 연혁(1998~2018년)	102
〈표 IV-14〉 태국 주세율(2017년 9월 16일 이후)	107
〈표 IV-15〉 OECD 비회원국의 주세율 제도	108
〈표 V-1〉 주종별 과세방식 비교	113
〈표 V-2〉 맥주 과세방식 비교	114
〈표 V-3〉 맥주 주세 과세표준 비교	119

그림 목차

[그림 II-1] 주종별 주류시장(출고량 기준) 점유 현황	12
[그림 II-2] 우리나라 맥주 수출·입 현황	14
[그림 II-3] 주요 수입국별 맥주 수입 추이	16
[그림 II-4] 2011년 세법개정 이후 수입주류 유통구조	20
[그림 II-5] 수출입업 면허발급 현황	21
[그림 III-1] 알코올 단위당 세율 비교: 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	53
[그림 III-2] 알코올 단위당 세율 비교: ASF 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	54
[그림 IV-1] 일본맥주의 생산·수출·수입 현황	69
[그림 IV-2] 일본 「주세법」상 맥주의 정의 개정사항	71
[그림 IV-3] 일본의 주세 세수 및 국제 대비 주세 비중	79
[그림 IV-4] 일본의 주류 판매(소비) 추이	80
[그림 IV-5] 호주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82
[그림 IV-6] 멕시코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87
[그림 IV-7] 터키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91
[그림 IV-8] 중국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94
[그림 IV-9] 베트남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100
[그림 IV-10] 태국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105
[그림 V-1] 조사대상국별 수입맥주 시장점유 현황(2005~2013년)	110

I. 서론

- 주세정책은 공공재원의 확보 외에도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음주소비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도 대부분 국가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안임

- 2000년 후반부터 국가별로 맥주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맥주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역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세정책을 주류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사항을 주도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실 무역협정은 무역장벽 제거 및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류와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의 가격인하는 음주소비 증가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주세정책은 WTO 협정의 내·외국민 대우(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맥주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점유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¹⁾
 - 국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주세율 과세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1) BNK투자증권(2018), p. 4.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맥주에 대해 종가세 과세방식의 주세율 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최근 개정사항 그리고 주류 가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주세율 제도의 개정 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일반적으로 주세제도는 크게 주세율 제도 관련 사항(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 등 주세 부과를 위한 규정)과 주세규제 관련 사항(제조, 유통, 판매 및 소비 관련 각종 규제정책 등)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전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축소 및 음주 소비 억제정책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주세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맥주시장을 국내제조시장과 수입맥주시장으로 구분하여 소비량과 시장점유율, 그리고 연혁별 수입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세 과세제도를 개괄함
 - 제III장에서는 주세율 과세체계의 설계 시 고려되는 기본개념에 대해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이 가입된 EU의 주류에 관한 지침과 주류 행정, 그리고 현재 종가세 과세방식을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세율 과세제도를 조사함
 - 제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가의 주세율 조세제도를 국제비교하고, 맥주 과세방식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 맥주시장 현황 및 추세제도

1. 우리나라 맥주시장 현황

- 국내 주류 소비는 출고량 기준으로는 맥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석식소주와 탁주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7년(추정) 현재 총출고량은 366만kl인데, 이 중 맥주가 215만kl로 58.8%의 점유율을 보임
 - 맥주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류시장에서 평균 57.4%의 점유율을 차지함
 - 희석식소주(25.8%)와 탁주(11.2%)가 맥주 다음으로 소비(출고) 비중이 높으나, 최근 12년간 미세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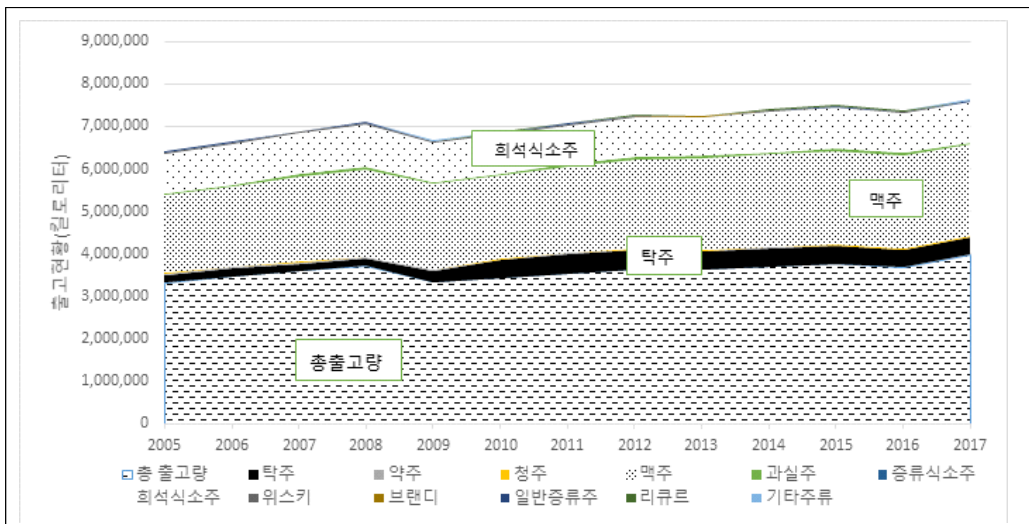
- 국내주류시장에 공급된 맥주량은 2013~2016년 연평균(실제출고량 기준) 196만kl이며, 국내 대기업 제조 3개사(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점유율의 하락 추세가 진행됨(〈표 II-1〉 참조)²⁾
 - 국내 대기업 제조 3사의 2017년(추정) 맥주 실제출고량과 점유율은 각각 161.6만kl와 82.8%로 2013년 점유율 95.0% 대비 12.2%p 감소함
 - 반면,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점유율(실제출고량 기준)은 0.1~0.2%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가, 소규모 맥주를 중심으로 2016년, 2017년에 각각 0.3%, 0.4%로 증가함

2) 국세청 내부자료

□ 한편 수입맥주의 2017년(추정) 실제 출고량과 점유율은 각각 32.7만kl, 16.7%이며, 2013년부터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표 II-1〉 참조)³⁾

[그림 II-1] 주종별 주류시장(출고량 기준) 점유 현황

(단위: kl)



주: 1. 총출고량은 국내분 환산출고량과 수입분 실제출고량을 모두 포함함
 2. 국내출고량에서 주정은 제외함
 자료: 2005~2016년 해당 분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년 해당 분은 국세청 내부자료

〈표 II-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실제 출고량 기준) 현황

(단위: 천kl,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추정)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국내제조	1,828.2	95.1	1,835.0	94.0	1,819.1	91.5	1,765.1	88.9	1,625.3	83.3	
	대기업	1,826.1	95.0	1,832.3	93.8	1,815.0	91.3	1,759.5	88.6	1,615.9	82.8
	중소	2.1	0.1	2.7	0.1	4.0	0.2	5.6	0.3	9.0	0.5
수입	94.5	4.9	117.7	6.0	168.0	8.5	221.4	11.1	327.0	16.7	
합계	1,922.7	100.0	1,952.7	100.0	1,987.1	100.0	1,986.5	100.0	1,952.2	10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3) 국세청 내부자료

가. 국내맥주 제조시장

- 국내맥주 제조시장에는 2015년 말 현재 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3개사(세븐브로이, 플래티넘, 장앤크래프트), 소규모 맥주 사업자 51개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함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의 2개사가 장기간 과점구조를 형성하다가, 2014년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신규진입으로 대기업 3개사가 경쟁하는 구도임
 - 롯데칠성음료의 설비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과 신제품 출시, 그리고 광범위한 주류유통망은 맥주시장의 경쟁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⁴⁾
 - 대기업 3사가 생산하는 맥주제품 대부분은 라거맥주 계열 20여개 종류로, 판매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임
 - 중소기업은 냉장차량을 갖춘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맥주 펍 등)에 직접 공급(비살균 맥주)하거나 종합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소매점(편의점, 마트 등)에 공급(살균 맥주)함
- 국내맥주 생산업체는 주류제조면허만을 보유할 수 있고, 맥주의 유통은 유통면허를 가진 도·소매상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맥주의 직접 판매는 불가능함
 - 단, 2018년 세법개정으로 소규모 주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소매점 유통이 허용됨

나. 수입맥주시장

1) 맥주 수입 및 주요 맥주 수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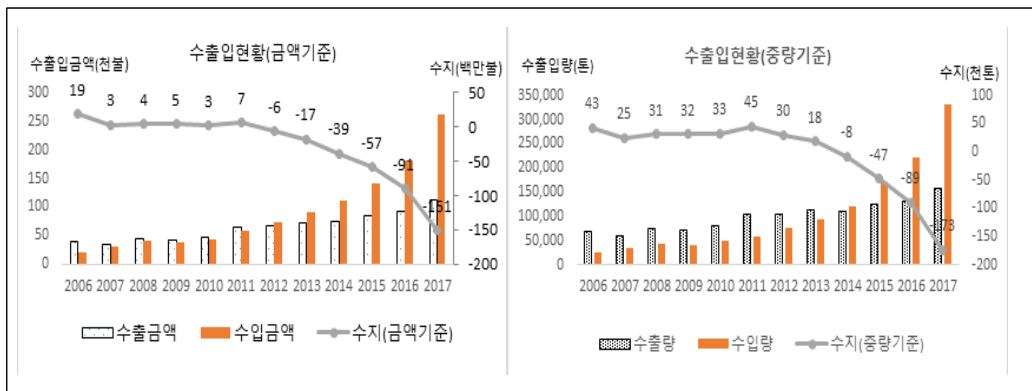
- 연도별 맥주 수출·입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

4) 최우석·이경화(2018), p. 4.

과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1억 5,1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금액기준)를 기록함

- 2012년 기준 맥주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7,400만달러, 6,800만달러이고, 2017년 기준 맥주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억 6,300만달러, 1억 1,200만달러로 수출액은 65.8% 증가한 데 비하여 수입액은 257.5%가 증가함
- 맥주 수출·입 물량의 측면에서도 2014년부터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여 2017년 현재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3억 3,100만톤, 1억 5,800만톤으로 1억 7,301만톤 무역수지 적자(중량기준) 상태임
- BGF리테일에 의하면, 편의점 CU맥주 매출액 중 수입맥주 점유율이 2014년 29.2%에서 2016년 56.7%로 국산맥주를 앞질렀음⁵⁾

[그림 II-2] 우리나라 맥주 수출·입 현황



주: 품목 HSK 220300에 해당하는 맥주통계자료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18. 5. 30.)

□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맥주 수입국(금액기준)은 EU(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맥주 수입 규모는 전체 수입규모의 90% 정도임⁶⁾

5) BNK 투자증권(2018), p. 13.

- 2012년 대비 2017년 수입금액 증가율은 중국(513%), EU(259%), 일본(171%), 미국(170%)의 순이고, 2012년 대비 2017년 수입량 증가율도 중국(614%), EU(356%), 일본(318%)의 순서임
- 소비자의 기호 변화, FTA 발효 후 무관세적용과 환율변동⁷⁾으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 맥주 수입업 겸업금지 폐지 등에 따른 국내 유통망 확대 등이 맥주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⁸⁾
 - 일본의 경우, 라거(lager) 타입의 일본맥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거리상 이점으로 인한 낮은 로지스틱스비용과 국내 유통망의 선점, 그리고 엔저 현상이 요인으로 제시됨
 - 중국의 경우, 한국방문(2016년 800만명) 및 체류(2016년 100만명) 중국인에 의한 중국맥주 수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브랜드 맥주의 한국 수출, 위안화 가치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제시됨
 - 유럽맥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와 무관세로 인한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와 같은 EU에서의 맥주수입이 증가함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e), 2017년 맥주 수입량 기준으로는 EU, 일본, 중국, 미국의 순서임

7) 연도별 환율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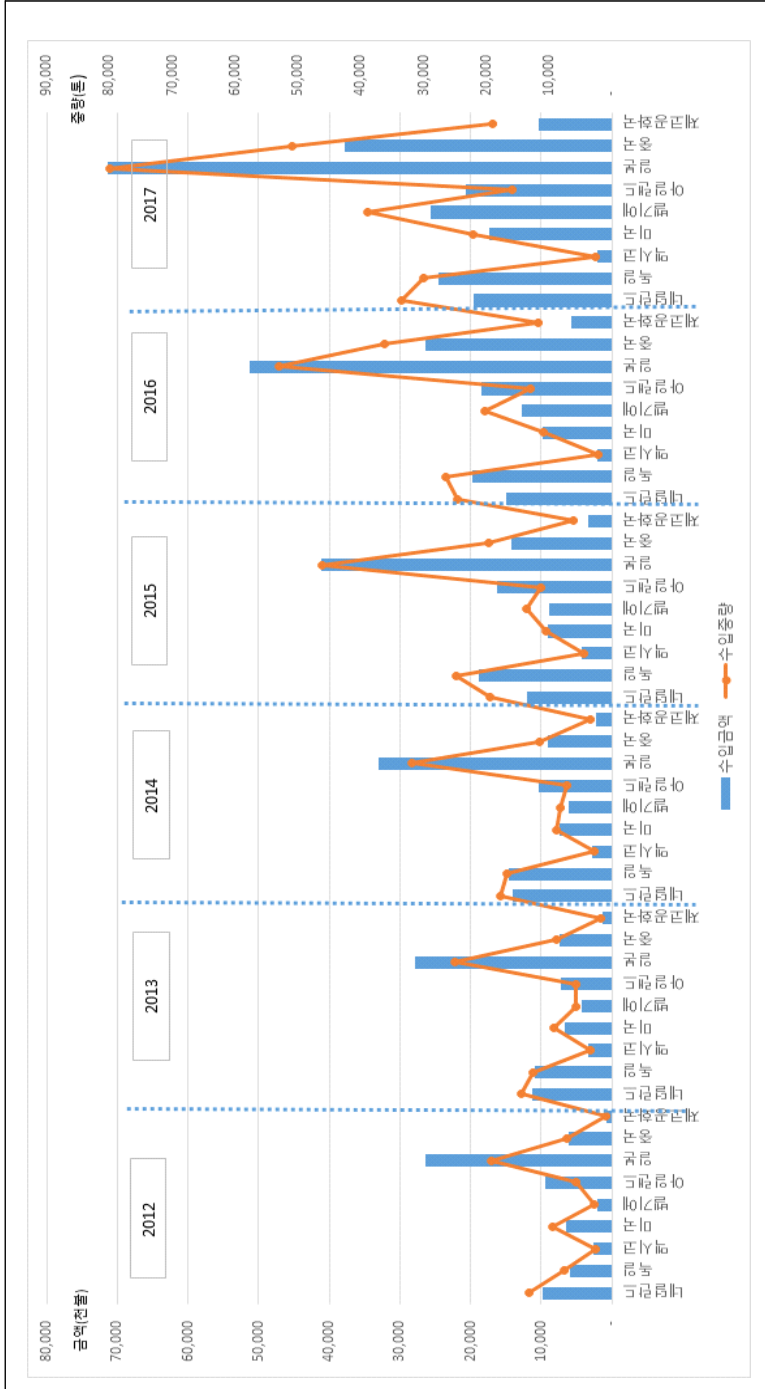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본(JPY)	1235.69	994.82	910.88	978.07	1,029.87	949.23
중국(CNY)	170.7	172.78	175.47	179.11	172.82	164.01
유럽(EUR)	1403.13	1,440.24	1,323.30	1,286.18	1,270.19	1,281.99
미국(USD)	1063.5	1,046.00	1,089.00	1,177.50	1,205.00	1,068.50

자료: KEB 하나은행 환율 기준(연도별 12. 31. 기준)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1/index.jsp>(검색일자 2018. 5. 18.)

8) Oh(2016), p. 6.;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p. 19.

[그림 II-3] 주요 수입국별 맥주 수입 추이



주: 품목 HSK 220300에 해당하는 맥주통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e), <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검색일자 2018. 5. 23)

2) FTA 체결국에서의 맥주 수입 현황

- 2018년 현재 미국, EU,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됨⁹⁾
 - 2016년 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2018년 1월과 7월부터 수입맥주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중국의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24%의 양허관세가 부과됨

〈표 II-2〉 주요 맥주 수입국의 관세율 부과 현황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25.7	21.4	17.1	12.8	8.5	4.2	0.0
EU	22.5	18.7	15.0	11.2	7.5	3.7	0.0
중국	30.0	30.0	30.0	28.5	27.0	25.5	24.0
일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주: 주요 맥주 수입국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는 EU 회원국이며, 일본은 FTA 미체결국에 해당하여 3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p. 18. 재인용

9) FTA 체결 현황 및 적용관세율

국가	적용연도(양허유형)	2018년 현재 (양허)관세율
EU	2011년 7월 1일 개시(7단계)	무관세(7월 1일부터)
미국	2012년 3월 15일 개시(7단계)	무관세(1월 1일부터)
터키	2013년 5월 1일 개시(7단계)	7.5%(2020년 무관세 예정)
싱가포르	2008년 9월 10일 개시(9단계)	무관세(2016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2008년 9월 10일(국가별 차별 적용)	15%
캐나다	2015년 1월 1일 개시(7단계)	12.8%
중국	2015년 12월 20일(20단계)	24%

자료: FTA Korea,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내부자료

- 한국과 EU 간 FTA로 EU로부터의 맥주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행 4년차인 2015년에는 발효 전 평년 대비 268.9% 증가함
- EU에서 수입되는 위스키(-9.7%), 포도주(33.1%), 보드카(202.2%)와 비교하여 맥주(268.9%)는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관세인하로 주류의 수입가격이 발효 이전 대비 11~17%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¹⁰⁾
 - 관세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는 위스키가 16.7%로 가장 높고 포도주(13%), 맥주(11.6%), 보드카(1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3〉 EU 주류 수입량 연도별 현황

(단위: kl, %)

구분	발효이전 평년(A)	한국·EU FTA 발효후 이행				발효대비 증감률 (A/B)
		1년차 (‘11. 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B) (‘14. 7.~’15.6.)	
맥주	16,821(39.7)	27,496 (41.7)	35,459(41.7)	51,624(48.1)	62,049(46.2)	268.9
위스키	20,732(95.2)	19,890(95.3)	18,405(93.9)	17,137(94.6)	18,713(95.7)	-9.7
포도주	13,364(52.8)	14,758(55.9)	17,298(54.7)	16,959(53.0)	17,787(43.1)	33.1
보드카	596(75.1)	1,072(75.7)	1,852(77.3)	2,060(77.0)	1,801(75.5)	202.2

주: () 안은 주종별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지성태·이현근·이수환(2015), p. 13. 재인용

- 한국·중국 FTA 이행¹¹⁾ 전·후 맥주 수입량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 1년차 2015년(양허관세 28.5%) 기준 맥주 수입량은 2014년(기준관세 30%) 대비 70.62% 증가하고, 수입금액은 55.92% 상승하였으며, 2017년 현재 수입금액과 수입량 증가율을 2014년과 비교하면, 각각 314%, 344%가 증가함

10) 지성태·이현근·이수환(2015), p. 13.

11) 한국소비자원(2016), 한국·중국 FTA 발효 전에는 맥주 수입 시 30%의 과세율이 부과되었는데,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1.5%씩 균등하게 인하하여 2036년에는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 일부 일본 브랜드 맥주 제조사가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중국산 맥주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를 수입증가의 전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표 II-4〉 중국맥주 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천달러, 톤)

2014		2015		2016		2017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9,117	11,490.4	14,215	19,604.8	26,394	35,159	37,739	50,96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소비자원(2016), p. 18. 재인용

3) 수입주류 유통거래단계 및 수입맥주업자 현황

- 2011년 말 세법개정 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류수입업자의 겸업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함¹²⁾
 - 2011년 말 「주세법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겸업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함¹³⁾
 - 유통규제를 완화하여 2012년 2월부터 수입주류의 중간 유통거래단계를 간소화하고, 유통비용을 인하하여 수입주류가격의 하향화 도모를 개정취지로 함
 - 주류수입업자의 소매판매 활성화 정책으로 제도개선 이후 주류수입업면허 신청건수가 월평균 6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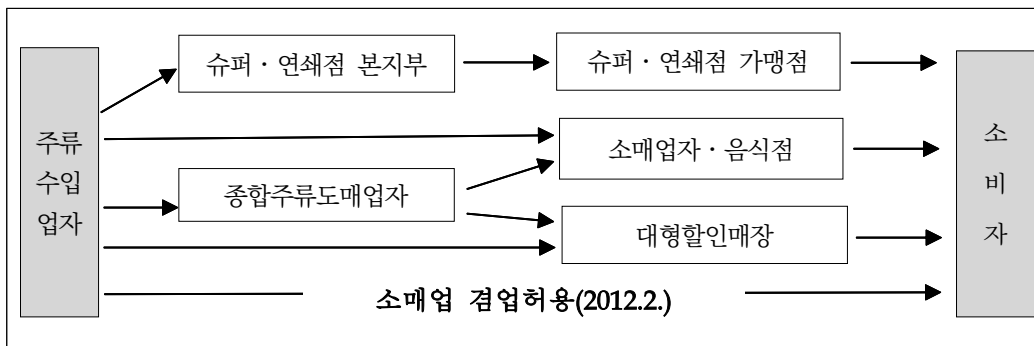
12) 한국과 칠레 간 FTA에 따라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원가 하락요인이 있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관세철폐 이전보다 상승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요 수입주류의 유통과정을 분석한 결과 현지 생산업자에 의한 가격인상 요인 외 수입주류 유통과정상 규제가 수입주류의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지적됨(2011. 12.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와인 등 수입주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폐지 등 주류수입업 면허제도 개선」)

13) 「주세법시행령」[별표 5]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전업요건을 삭제함(2012. 1. 31. 「주세법 시행령」 개정, 2. 2. 공포)

14) 기획재정부,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2012년 물가안정책임관회의, 2012. 8. 29.

- 추가로 2013년 2월부터 완화된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적용함
 -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을 삭제하고 창고면적 요건(66m² → 22m²)을 완화함
- 2011년 세법개정 이전 수입주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수입, 유통, 판매를 각각 분리하여 운용하였음
 - 1983년 「주류법」 개정 시 유통단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음
 - 주류수입업 외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타 영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수입업자는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만 수입주류를 판매하도록 하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금지하였음¹⁵⁾

[그림 II-4] 2011년 세법개정 이후 수입주류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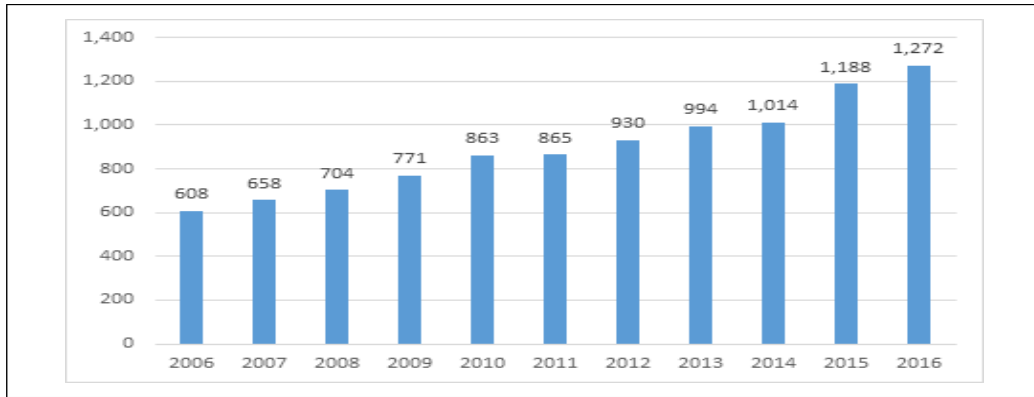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2012년 물가안정책임 관회의, 2012. 8. 29.

-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완화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 중 수출입도매업면허가 2006년 608건에서 2016년 1,272건으로 209% 증가함
 - 주류수입자 면허발급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적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15)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그림 II-5] 수출입업 면허발급 현황

(단위: 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2010. 3. 4

- 2016년 현재 맥주 수입업자는 약 30여개 이상 추정되며, 이 중 10여개의 수입업자가 맥주 수입물량의 70% 이상을 담당함¹⁶⁾
 - 2012년 이후 제조업이나 유통업, 판매업과 겸업하여 맥주를 수입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¹⁷⁾, 국내 맥주제조사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역시 맥주 수입을 개시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인 롯데아사히 주류가 맥주를 수입함¹⁸⁾
 - 2016년 현재 이들의 수입맥주시장 점유율은 각각 14%, 6%, 18%로 전체의 38%를 차지함
 - 이 외에도 유통사인 (주)비어K와 해외 주류제조사의 한국 자회사인 하이네켄코리아, 필스너우르젤코리아, 디아지오 등이 2016년 현재 각각 16%, 15%, 9%, 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16) Oh(2016), p. 12.

17) 한국주류산업협회 내부자료(기업별 경영공시자료, 업체별 자체조사)

18) 오비맥주는 호가든(로제/그랑크루/포비든플랫),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벅스, 뢰벤브로이, 레페브라운, 레페블론드, 바스, 보딩턴, 프란치스카너, 모젤, 하얼빈, 산토리프리미엄몰츠, 버드아이스, 네그라모델로, 보딩턴 등 18종의 맥주를 수입함. 하이트진로는 기린이치방시보리, 칼스버그, 서머스비, 싱하맥주, 크로넨버그1664블랑, 투이즈엑스트라드라이, 포엑스골드 등 7종을 수입함. 롯데칠성은 아사히맥주, 맥가글스 3종, 밀러라이트,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NU 등 7종을 수입함(BNK투자증권(2018, p. 15)

- 대형 유통사인 이마트에서 출자한 신세계엘앤비는 포도주와 맥주를 수입·판매하고, 롯데마트는 독일 맥주제조업체 웨팅어(Öttinger)로부터 L맥주를 기획·판매함¹⁹⁾

〈표 II-5〉 맥주 수입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단위: 원, %)

수입업체	제품명	수입국	매출액	시장점유율
롯데아사히	아사히 슈퍼드라이	일본	95,644,880,000	18
	아사히 프라임리치	일본		
	Amber Time(프라임 둔켈)	일본		
(주)비어K	칭다오	중국	86,011,080,000	16
	에당거	독일		
하이네켄코리아	하이네켄맥주	네덜란드	81,059,920,000	15
	에텔바이스	오스트리아		
오비맥주	코로나	멕시코	77,267,434,000	14
	호가든	벨기에		
	버드와이저	미국		
	스텔라 아르투아	벨기에		
	산토리	일본		
	백스	독일		
	레페	벨기에		
레벤브로이	독일			
필스너우르겔 코리아	필스너 우르겔	체코	51,000,000,000	9
	벨코포포빅키 코젤 다크	체코		
	페로니	이탈리아		
	그롤쉬 프리미엄 라거	네덜란드		
디아지오	기네스	아일랜드	40,000,000,000	7
하이트진로	기린이치방	일본	34,315,918,376	6
	블랑	프랑스		
	투이즈엑스트라 드라이	호주		

19) 『조선비즈』, 「롯데마트, 반값 수입맥주인 'L맥주 출시」, 2012. 10. 16일자 뉴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2802.html(검색일자 2018. 5. 30.); 『서울경제』, 「유통 빅3발 '수입맥주 대전」, 2016. 6. 20일자 뉴스, <http://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KXNWOJYR5>(검색일자 2018. 5. 30.)

수입업체	제품명	수입국	매출액	시장점유율
	포엑스골드	호주		
	싱아맥주	태국		
엠즈베버리지	삿포르맥주	일본	29,328,830,000	5
	에비스	일본		
파울라너코리아	파울라너 헤페바이젠	독일	10,000,000,000	2
(주)마드라스	산미구엘	필리핀	10,000,000,000	2
케이비코리아	크롬바커 바이젠	독일	4,713,850,000	1
기타	기타수입맥주	-	25,742,841,325	5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 내부자료

2. 우리나라 주세제도

가. 주세 연혁

1) 과세방식

□ 정부수립 이후 1949년 도입 초기에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함²⁰⁾, ²¹⁾

○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주세법」을 제정함

- 주정과 알코올 함량 1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함
- 주류를 양조주²²⁾, 증류주²³⁾, 제제주²⁴⁾의 세 종류로 구분함
- 주류의 출고시점에 제조자로부터 징수함

20) 박명호·문예영(2007), p. 9.

21) 종량세와 증가세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Ⅲ장 제1절을 참고할 것

22) 양조주란 탁주, 약주, 맥주, 청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류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임

23) 증류주란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류 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임

24) 제제주란 과하주, 합성청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 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제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임

- 1954년 3월에 종량세와 증가세 과세방식을 병행하여 주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함
 - 기존 주세율이 다른 세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각 주종별 종량세율을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출고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증가세를 부과함
 - 종량세의 경우 주류에 따라 최저 100%(맥주)에서 최고 364%(합성청주 2급)까지 세율을 인상함²⁵⁾

- 1961년에는 1954년 이후부터 적용했던 종량세와 증가세의 병행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일원화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함
 - 종량세와 증가세를 병행함에 따라 주류행정에 있어 번잡함과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량세로 통합함²⁶⁾

- 1967년 세법개정으로 1968년부터는 일부 주종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부터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현재에 이룸
 - 유통경제구조의 발달에 따라 가격구조가 복잡해지고 동일 주종 내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기존 종량세 방식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주세의 과세체계를 증가세로 전환함²⁷⁾
 -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물가상승률이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종량세 과세방식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는 주장도 있음²⁸⁾
 - 1967년 11월 29일 법률개정을 통해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하고 주세의 과세방식을 증가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함
 - 1972년부터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증가세로 과세함

25) 서현수(2007), p. 65.

26) 서현수(2007), p. 66.

27) 헌법재판소2014헌바114, 2016. 9. 29.

28) 전병목·성명재·김우철, 2017, p. 112.

2) 과세표준

- 1968년 증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국내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증가세 도입 이후 2018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

-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당초 관세부과를 위한 도착가격과 관세 그리고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에서 통상이윤상당액을 제외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통상이윤상당액은 도착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1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상이윤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²⁹⁾

〈표 II-6〉 1991년 세법개정 전후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1968년 ~1991년 6월	아래 항목을 합산한 금액: - 도착가격(관세부과를 위한 감정가격) - 관세 - 통상이윤상당액((도착가격+관세)의 10%)
1991년 7월 이후	아래 항목을 합산한 금액: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자료: 「주세법」, 각 연도

29)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44&lsId=&efYd=&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검색일자: 2018. 6. 14.)

3) 세율 체계

- 증가세 도입 당시 주종별 세율을 살펴보면, 주류의 세율 결정에 있어 알코올 함량 보다는 가격을 중요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었음
 - 이른바 고가주로 불리는 위스키, 맥주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주와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주세에 대해서 사치세 또는 세수 확보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³⁰⁾

- 우리나라의 주세율 구조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수입주류의 증가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과 2000년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음
 - 1991년부터 복잡한 주종을 좀 더 단순화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함
 - 2000년에는 EU 및 미국과의 주류 관련 무역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결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증류주의 세율을 일원화시킴

- 구체적으로 1990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 구간을 10~200%에서 5~150%로 조정함³¹⁾
 - 기존에는 제조원료, 첨가물,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주류를 분류하여 주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최종제품의 성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주종을 단순화함(기존 18종→ 11종)³²⁾
 - 주류소비행태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특히 통상마찰의 요인인 위스키류 등에 대한 세율을 조정함
 - 기존에는 위스키에 대해 주종 중 최고세율(200%)이 적용되었으나 맥주, 브랜디와 같은 수준(150%)으로 세율을 인하함
 - 동시에 증류식 소주는 세율을 인상함(35%→50%)

30) 현진권·성명재(2012), p. 155.

31) 성명재·장근호(1999), p. 227.

32) 2000년부터는 약주와 청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를 분리시킴([구 「주세법」 제4조, [법률 제6055호])

- 2000년에는 WTO 패널 판결의 권고에 따라 증류주의 세율을 단일화함
 - 1993년 EU의 요구에 따른 한·EU 협상결과에 따라 위스키와 브랜디의 세율을 20%p 인하함³³⁾
 - EU는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과세체계를 전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관철되었으나 위스키 및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하함(1994년 120%→1996년 100%)
 - 1997년에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주류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는데, 1998년 2월 우리나라가 패소하여 종결됨³⁴⁾
 - 한국시장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나 소주(38.5%, 교육세 포함)와 위스키(130%, 교육세 포함) 사이의 세율격차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므로 당시 우리나라의 차별적인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도록 요구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단일화함
 - 주세의 과세방식은 개별국가의 조세주권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인정되어 종가세 과세체계 내에서 세율만 변경함³⁵⁾

- 2000년 증류주 세율의 단일화 이후 저도주인 맥주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증류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³⁶⁾
 - 맥주업계에서 저알콜·대중주라는 이유로 주세율의 인하를 요구함
 - 1980년대 이후에는 맥주가 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주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맥주가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07년부터는 증류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 맥주가 주세 세수 중 65%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세수확보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짐

33) 성명재·장근호(1999), p. 227.

34) 전병목·성명재·김우철(2017), pp. 154~155.

35) 재정경제부(1999), p. 1.

36) 재정경제부(1999), 참고 4.

- 한편, 청주의 경우 2002년에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보호·육성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함(2001년 70%→2002년 30%)
 - 과거 쌀 생산량이 낮았던 시기에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해 고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정체됨에 따라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청주의 세율을 인하함
 - 또한, 동일 계통 주종인 약주와의 조세형평성 도모 및 전통주 보호라는 목적을 반영함

〈표 II-7〉 우리나라 주세율의 변천 현황

(단위: %)

구분	'68	'72	'73. 2.26	'74. 1.14	'75	'91. 7	'94	'96	'97	'00	'01	'02	'04	'05	'06	'07
〈주정〉	49,350/kl						57,000/kl									
〈발효주류〉																
탁주	주.	10				5										
약주	주.	60				30										
청주	청주	80	100	120		70					30					
	합성청주	60	65													
	명약주	-	-	80	100											
맥주	맥주	100	120	150		150			130	115	100		90	80	72	
	합성맥주	90	100													
과실주	20	25				30										
〈증류주류〉																
증류식소주	30	35				50					72					
희석식소주	30	35				72										
위스키	150	160	250	200	150	120	100		72							
브랜드	-	100	160	150	150	120	100		72							
일반 증류주	기타증류주	50		80		80					72					
	기타양조주	90	100	110												
	고량주	90	110													
	기타재제주1	30	35		100											
	기타재제주2	40	50		40											
	위스키류· 브랜드류 함유	-						100								

구분		'68	'72	'73. 2.26	'74. 1.14	'75	'91. 7	'94	'96	'97	'00	'01	'02	'04	'05	'06	'07
리큐르	인삼주1		-			100		50						72			
	인삼주2		-			50											
〈기타 주류〉	기타 발효주류	30		35		100		80						30			
	불휘발분 30도 이상					-								10			
	상기 이외 주류	40		50		40		80						72			

주: 1968년부터 1971년까지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함
 자료: 「주세법」, 각 연도: 성명재·장근호(1999) p. 22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특례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소규모 농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일
 정량까지 주세율을 50% 감면하였음³⁷⁾
 - 국산과실을 사용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대해 주세부담을 완화하여 국산 과실
 주의 판매 증대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제도를 신설함
 - 소규모 제조요건은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기준으로 제조량이 500
 kl 이하인 자 또는 신규 면허 발급자임
 - 경감세율의 적용대상 물량은 당해 주조연도에 먼저 출고된 200kl 이하 주류임

- 2008년에는 '전통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범위를 전통주
 에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행함
 - 대기업 생산주류 및 수입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전통주산업 보호목적
 으로 법률을 개정함
 - 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
 류,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37)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임

- 소규모 제조요건 및 경감세율 적용대상 물량요건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함
 - 다만, 2008년 적용대상에 추가된 증류주의 경우에는 소규모 제조요건 및 적용대상 물량을 발효주류의 1/2수준(250kl, 100kl)으로 함

5) 주세 부가세(surtax)

-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주류(탁주·주정 제외)에 대해서 주세 이외에 방위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함
 - 단, 주세의 세율이 10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고세율을 적용함
 - 1975년부터 1978년까지는 주세액의 20%이며,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주세액의 30%임
 - 방위세는 199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
- 1982년부터는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WTO 패널 판결에 따라 2000년부터 증류주의 주세율 일원화 과정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소주 또한 2000년부터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표 11-8〉 교육세 과세대상 주류 및 세율

구분	1982년~1990년	1991년~1999년	2000년~
과세 대상	주정, 소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주정, 소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세율	주세액의 10%	주세액의 10% (단, 주세율 80% 이상, 주세액의 30%)	주세액의 10% (단, 주세율 70% 이상, 주세액의 30%)

자료: 「교육세법」, 각 연도

6) 기타 주류행정³⁸⁾

- 1949년 「주세법」 제정 후 1966년 3월 국세청이 발족되기 이전에는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를 받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없었음

- 1966년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가 시행됨
 - 주류업계의 문란사태 수습을 위해 생산시설을 규제함
 - 주류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함
 - 면허의 조절 및 남발 방지, 면허의 이권화 및 면허권자의 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및 준칙을 마련함

- 1970년대에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훈령 등을 정비하고 각종 예규를 정리하여 「주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함

- 1990년대는 주류행정의 개방화가 이루어짐
 - 1984년 맥주를 시작으로 1994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류 수입을 개방함
 - 1990년 주류도매면허를 개방하고 1991년 제조면허를 단계적으로 개방함
 - 1999년 판매업면허를 12종에서 6종으로 통합하고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함

- 2000년대에는 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2002년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도를 신설함
 - 2003년 주류의 알콜도수를 폐지함
 - 2004년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농민주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함

38) 박명호·문예영(2007), pp. 16~18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이후의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함

- 2008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함
- 2010년대에도 주류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이루어짐
 - 2010년 탁주·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류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함
 -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안전관리를 전담함
 - 2012년 주류수입면허 요건 중 '전업요건'을 폐지함
 - 주류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수입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전업요건을 폐지하였음
 - 2013년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함
 - 2016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주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 주세의 과세대상은 주류로서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해당됨³⁹⁾
 -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함

39) 「주세법」 제3조

- 주정은 주로 소주의 원료로 사용됨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그대로 음용할 수 있는 것과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상태의 것을 포함함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함
- 우리나라 세법은 주류를 최종제품의 성상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⁴⁰⁾
 - 주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구분됨
 - 주정
 - 발효주류: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일주
 -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주류: 위 이외의 주류
- 「주세법」은 주류 종류별로 제조방식, 알코올분, 첨가물 등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분류하고 있음⁴¹⁾
 - 각 주종별 세부내용은 <표 II-9>와 같음

<표 II-9> 「주세법」상 주종별 세부정의

구분		정의
주정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주류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등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등
	청주	곡류 중 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주류 등을 첨가한 것 등

40) 「주세법」 제4조

41) 「주세법」 별표

구분		정의
	맥주	엿기름, 홉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등
	과실주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등
증류주류	소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곡(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등(단, 불휘발분 2도 미만)
	위스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등(단, 불휘발분 2도 미만)
	브랜디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등(단, 불휘발분 2도 미만)
	일반증류주	녹말 또는 당분을 주원료로 발효, 증류한 것 또는 증류주를 혼합한 것 등으로서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이외의 주류로 불휘발분이 2도 미만인 것
	리큐르	일반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기타주류		그 밖의 주류

자료: 「주세법」 별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주세 납세의무자

-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류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임⁴²⁾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⁴³⁾

42) 「주세법」 제2조

4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2) 과세표준

- 주정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한 수량이며, 그 이외의 주류는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임⁴⁴⁾
 - 우리나라는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하나 그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함

- 제조장 출고가격은 원칙적으로 통상가격에 의하며,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함
 - 통상가격이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함⁴⁵⁾
 - 출고가격에는 주류의 주세액은 포함되지 않으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됨
 - 주세의 부가세(sur tax)인 교육세도 포함되지 않음
 - 병입출고하지 않는 주류로서 그 용기 등의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국내제조주류를 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의 출고가격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함
 - 예를 들어, 주류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에 의하되,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함

44) 「주세법」 제21조

45)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표 II-10〉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원칙	주정	국내제조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
		수입	수입신고하는 수량
	그 외	국내제조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가격
		수입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특례	외상방식에 의해 통상가격보다 고가로 출고하는 경우		통상가격보다 높은 해당 가격
	선매방식에 의해 통상가격보다 저가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		통상가격
	출고된 주류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정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		당초 출고시의 가격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당해 주류와 동일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이 원칙임. 그러나 원칙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주류의 제조원가(원료비,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임
	주류제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저가로 출고하는 경우		통상가격
	주류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무관하게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및 운송비를 주류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

자료: 이준규·송은주(2017, p. 188)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⁴⁶⁾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관련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⁴⁷⁾
 - 증가세 과세체계에서 세원관리 목적으로 가격신고제를 운영함⁴⁸⁾⁴⁹⁾
 - 한편 2018년 이전에는 출고가격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했으며, 실무적으로는 물가안정 및 세원관리 목적으로 출고가격 인상여부 및 인상률 등을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 후 승인받았음⁵⁰⁾

3) 세율

- 우리나라는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 1kl당 57,0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에 따라 5% 내지 72%의 세율을 적용함
 - 탁주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맥주·증류주류 및 기타 증류주류에 대해서 최고세율인 72%를 적용함
 - 전반적으로 증류주류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발효주류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발효주류인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됨

〈표 II-11〉 「주세법」상 주세의 세율

(단위: %)

구분		세율
주정		주정 1kl당 57,000원
발효주류	탁주	5
	약주·과실주·청주	30
	맥주	72
증류주류		72

46) 소규모 주류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판매가격임

47)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48)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018. 1.

4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5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구분		세율
기타주류	기타 발효주류	30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주류	10
	상기 외의 주류	72

주: 다만 주정의 경우 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함
 자료: 「주세법」 제22조

4) 면세 및 세액공제

- 우리나라는 반출된 주류, 수입된 주류 및 주정 중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세함⁵¹⁾
 - 국내에서 반출하는 주류 중 수출하는 주류, 국내 주둔 외국군대 또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등에 납품하는 주류 등에 대해서 주세를 면제함
 - 수입하는 주류 중 주한외국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장 중 어느 하나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등에 대해서 주세를 면제함
 - 주정을 국가의 화약제조용, 의료 의약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함

- (미납세반출) 수출용주류나 원료용주류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유보함⁵²⁾
 -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음
 - 다만,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출자에게 그 주세를 징수함

51) 「주세법」 제31조, 제32조

52) 「주세법」 제33조

- 이미 주세가 납부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함⁵³⁾
 -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장 중 어느 한곳으로 돌아온 경우
 -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 공제 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환급함

- 이미 주세가 납부된 주류를 원료로 다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⁵⁴⁾
 -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함

5)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국내제조주류와 수입주류를 구분하여 주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방법을 정함
 - 국내제조주류는 주세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함
 - 반면, 수입주류는 주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함

- 국내제조주류의 경우 매 분기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신고하고 납부함⁵⁵⁾

53) 「주세법」 제34조

54) 「주세법」 제35조

55) 「주세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 국내제조주류의 경우 매 분기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특례

-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공급하는 주류의 출고가격 산정방법을 간단히 규정함
 -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탁주·약주 및 청주 등의 경우 통상의 제조 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출고가격으로 함⁵⁶⁾
 - 반면, 일반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함⁵⁷⁾
- 또한, 소규모 주류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감함
 -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탁주·약주 및 청주 등의 경우 출고가격에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표 II-12〉 소규모 주류생산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단위: %)

구분		과세표준산정비율
맥주	먼저 출고된 200kl 이하 수량	40
	이후 출고된 200kl 초과 500kl 이하의 수량	60
	이후 출고된 500kl 초과 수량	80
탁주·약주·청주	먼저 출고된 5kl 이하 수량	60
	이후 출고된 5kl 초과 수량	80

자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56)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조원가는 원료비,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주세법 시행령」 제20조)

57)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용이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맥주 중 먼저 출고하는 500kl 이하의 맥주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 상당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 맥주주류장의 일반적 시설기준을 갖추고 해당 주조연도에 맥주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았거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함

- 한편, 소규모로 출고하는 전통주로서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kl(증류주류의 경우 100kl)에 대해서는 관련 주세율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함⁵⁸⁾
 - 전통주란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임⁵⁹⁾
 -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규모 생산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발효주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기준으로 500kl 이하 제조
 - 증류주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기준으로 250kl 이하 제조
 -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7) 주세의 부가세(sur tax)

-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주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징수함
 - 주종별 적용되는 주세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됨
 - 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세액의 30%, 주세율이 70% 미만인 경우 10%임

58) 「주세법」 제22조,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59) 「주세법」 제3조

다. 주세 징수현황

- 주세의 납부세액 기준(주정포함)으로 2017년(추정) 기준 3조 2,754억원 중에서 맥주주세가 1조 6,356억원(세수비중 49.9%)으로 가장 높음(〈표 II-13〉 참조)
- 희석식소주의 세수비중은 38.0%로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위스키(3.9%), 과일주(2.9%)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 맥주와 희석식소주를 비교하면 통상적으로 1병당 판매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1병당 병입량이 맥주가 훨씬 크므로 물량비중 대비 세수비중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⁶⁰⁾
 - 희석식소주와 위스키를 비교하면 통상적으로 1ℓ당 판매가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물량비중 대비 세수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탁주의 세수는 0.6%로 매우 미미한데, 가격이 싸고 주세율이 5%에 불과하여 출고량 기준으로는 3위를 차지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음

60) 전병목·성명재·김우철(2017), p. 21.

〈표 II -13〉 주종별 주류 출고량(환산출고량 기준) 및 세액

(단위: kl, %, 백만원)

출고량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1	458,198	18,975	22,329	2,022,215	46,384	706	923,028	23,371	927	10,525	4,621	4,312	294,743	3,830,334
2012	448,047	16,544	23,860	2,103,654	46,505	693	950,962	20,428	704	11,790	6,547	4,484	303,184	3,937,402
2013	426,216	14,538	25,326	2,156,597	52,091	805	905,919	18,488	744	15,214	6,806	5,295	293,037	3,921,076
2014	430,896	12,320	23,291	2,173,472	53,664	861	957,818	17,991	998	16,832	6,844	6,475	313,410	4,014,872
2015	416,046	11,332	22,249	2,208,808	61,905	1,045	955,523	17,402	642	19,226	36,316	7,292	315,829	4,073,615
2016	399,667	11,490	22,993	2,200,117	56,346	1,307	932,261	16,674	688	15,407	18,786	12,507	307,054	3,995,297
2017 (추정)	409,410	10,821	24,836	2,150,877	51,505	1,963	945,873	15,794	514	14,390	10,198	24,869	313,475	3,974,523
비중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1	12.0	0.5	0.6	52.8	1.2	0.0	24.1	0.6	0.0	0.3	0.1	0.1	7.7	100.0
2012	11.4	0.4	0.6	53.4	1.2	0.0	24.2	0.5	0.0	0.3	0.2	0.1	7.7	100.0
2013	10.9	0.4	0.6	55.0	1.3	0.0	23.1	0.5	0.0	0.4	0.2	0.1	7.5	100.0
2014	10.7	0.3	0.6	54.1	1.3	0.0	23.9	0.4	0.0	0.4	0.2	0.2	7.8	100.0
2015	10.2	0.3	0.5	54.2	1.5	0.0	23.5	0.4	0.0	0.5	0.9	0.2	7.8	100.0
2016	10.0	0.3	0.6	55.1	1.4	0.0	23.3	0.4	0.0	0.4	0.5	0.3	7.7	100.0
2017 (추정)	10.3	0.3	0.6	54.1	1.3	0.0	23.8	0.4	0.0	0.4	0.3	0.6	7.9	100.0

납부(할)세액	택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1	21,971	21,908	27,460	1,346,794	73,523	3,281	968,300	234,546	7,112	16,619	11,404	2,747	2,454	2,738,119
2012	21,444	18,464	27,486	1,430,242	72,473	3,387	1,011,468	204,417	5,309	20,776	17,968	3,174	2,411	2,839,019
2013	20,345	17,119	29,600	1,544,699	81,381	4,015	1,052,401	171,016	5,640	25,864	19,981	3,742	2,326	2,978,129
2014	20,580	14,667	29,404	1,568,691	83,207	4,857	1,138,898	172,174	4,702	28,889	19,453	4,814	2,358	3,092,694
2015	20,204	13,557	28,051	1,608,517	87,680	6,573	1,171,309	167,310	4,939	27,825	82,663	5,970	2,368	3,226,966
2016	19,504	13,475	29,432	1,602,639	96,572	8,402	1,212,082	149,588	5,771	28,279	49,158	20,431	2,210	3,237,543
2017 (추정)	19,173	11,983	28,906	1,635,591	93,889	11,185	1,243,198	127,508	5,089	30,284	27,042	39,467	2,105	3,275,422
비중	택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회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계
2011	0.8	0.8	1.0	49.2	2.7	0.1	35.4	8.6	0.3	0.6	0.4	0.1	0.1	100.0
2012	0.8	0.7	1.0	50.4	2.6	0.1	35.6	7.2	0.2	0.7	0.6	0.1	0.1	100.0
2013	0.7	0.6	1.0	51.9	2.7	0.1	35.3	5.7	0.2	0.9	0.7	0.1	0.1	100.0
2014	0.7	0.5	1.0	50.7	2.7	0.2	36.8	5.6	0.2	0.9	0.6	0.2	0.1	100.0
2015	0.6	0.4	0.9	49.8	2.7	0.2	36.3	5.2	0.2	0.9	2.6	0.2	0.1	100.0
2016	0.6	0.4	0.9	49.5	3.0	0.3	37.4	4.6	0.2	0.9	1.5	0.6	0.1	100.0
2017 (추정)	0.6	0.4	0.9	49.9	2.9	0.3	38.0	3.9	0.2	0.9	0.8	1.2	0.1	100.0

주: 1. 해당연도 환산 출고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단, 수입분은 실제 수입량 기준임

2. 환산 알코올도수는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회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임(「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4항)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2017년 국세청 내부자료

- 한편, 주세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내국세 세입 중 주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1.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II-14〉 참조)⁶¹⁾
 - 1966년에는 총내국세 700억원 중 64억원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⁶²⁾ 2016년에는 총내국세 209조원 중 3조원으로 1.53%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사치재 및 담배류, 석유류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기타 소비세 중 주세는 5년(2012년~2016년) 평균 31.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수와 주세를 가산하여 계산함
 - 2015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주세가 기타 소비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016년 각각 28.0%, 26.4%로 감소함⁶³⁾

〈표 II-14〉 연도별 우리나라 기타 소비세 중 주세의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세(A)	28,390	29,781	30,927	32,270	32,375
개별소비세(B)	53,170	55,956	57,926	82,898	90,342
기타 소비세(C=A+B)	81,560	85,737	88,853	115,168	122,717
기타 소비세 중 주세 비중(A/C)	34.8	34.7	34.8	28.0	2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6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62) 서현수(2007), p. 86.
 6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Ⅲ. 주세율 과세체계 기본개념

- 일반적으로 주류, 석유류, 담배와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외에도 개별소비세(excise 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함⁶⁴⁾
 -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모두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특히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이하 주세)는 2012년 기준으로 167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도입·운용하고 있음⁶⁵⁾
- 특별소비세는 국가별로 처해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과세목적 등에 따라 달리 설계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주세를 중심으로 과세체계의 설계 시 고려되는 기본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봄⁶⁶⁾

1. 과세방법

- 주세율 과세방법(tax methods)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 종량세 방식(specific taxation), 종가세 방식(ad valorem taxation), 단일과세 방식(unitary tax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주세율 과세체계를 설계함
 - 세 가지 방식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균일과세(uniform taxation)

64) OECD(2016), p. 23.

65) WHO(2014), p. 81, pp. 89~288.

66) 본문은 Sornpaisarn et al.(2017)의 Section 3(pp. 32~44)과 Section 4(pp. 67~68)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함

방식이라고 하고, 둘 이상 결합하여 설계하는 경우 결합과세(combination taxation) 방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됨

- 한편 주세의 부과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음주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독·과점시장의 경우에는 과세방법별로 다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⁶⁷⁾
- 따라서 본문에서는 과세방법별로 주세부과에 따른 생산, 소비, 세수입 측면에서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간략하게 살펴봄

가. 균일과세 방식

1) 종량세 과세방식(specific taxation)

-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또는 에탄올)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함
 - 일반적으로 ‘순수 알코올 1 리터(liter of pure alcohol)’ 또는 ‘알코올 함유량 1 리터(liter per degree of alcohol content)’ 단위에 대해 고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표현됨⁶⁸⁾
 - 원산지나 주종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 공통분모인 알코올을 과세단위로 함
- 종량세 과세방식에서의 세율이 인상될 때,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알코올 단위당 세후가격(price of the alcoholic beverage per unit of ethanol, BPPE)은 증가하여 독·과점시장에서의 단기 소비량은 감소할 수 있음⁶⁹⁾

67) Sornpaisarn et al.(2017), p. 32.

68) Richupan(2005), p. 8

69) Sornpaisarn et al.(2017), p. 33.

-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주류음료의 생산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과 함께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음료의 생산을 장려함
 - 가격탄력성이 1 미만인 경우, 주류가격의 상승에 비하여 주류 소비량 감소율이 낮기 때문에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종량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음⁷⁰⁾
- 종량세 과세방식은 과세표준의 평가 및 가격조작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여 주세 징수가 용이하고, 품질향상 및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
 -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가격인상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저가주류를 소비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단일과세 방식(unitary taxation)

- 주류의 알코올 함유량에 관계없이 리터(liter)와 같은 음료제품의 부피에 대해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리터당 일정 고정금액으로 표시됨⁷¹⁾
- 정확한 알코올 도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포도주와 같은 주류는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⁷²⁾
- 과세방법에 따른 납세자(주류 생산자)의 대응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단일과세 방식은 종량세 방식과 구분됨⁷³⁾
- 단일과세 방식에서의 세율이 증가할 때, 생산자가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알코올 단위당 주류의 세후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인상됨

70) Richupan(2005), p. 38

71) Richupan(2005), p. 11.

72) Sornpaisarn et al.(2017), p. 32.

73) Sornpaisarn et al.(2017), p. 32.

- 이론상 생산자는 알코올 단위당 세부담 경감을 위해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를 생산하거나 소비자 선호에 맞춰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유인이 있음⁷⁴⁾
 - 장기적으로는 총알코올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세율의 인상에 따라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3) 종가세 방식(ad valorem taxation)

- 종가세 방식은 제품가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주세를 과세함
 - 종가세 과세방식의 과세표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가격(공장 출하가격 ex-factory price) 또는 소매가격이 이용됨
 - 생산자 가격에는 제조원가(광고비 또는 운송비 포함)와 주류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자 이윤이 포함되고, 소매가는 생산자 가격에 추가적으로 소매판매비, 소매업자의 이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이 포함됨
 -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IF(Cost-Insurance-and-Freight, 운임보험료인도) 조건의 가액에서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임⁷⁵⁾
- 만일 주류 구매 시 소비자가 주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지불할 때, 포괄적 세율(inclusive tax rate) 또는 배제적 세율(exclusive tax rate)의 개념 구분이 필요함
 - 전자의 경우, 과세기준(tax base)에 이미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지만, 후자의 과세표준은 주세가 제외된 금액임⁷⁶⁾
 - 전자의 사례로는 한국과 태국의 주세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제품 판매가격의 일정비율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포괄적 세율은 동일한 비율의 배제적 세율보다 더 높은 세수입을 보장함

74) Sornpaisarn et al.(2017), p. 34.

75) Richupan(2005), p. 8.

76) 예를 들어, 주류의 가격이 1달러이고 주세가 0.5달러인 경우 소매가(주세 포함)는 1.5달러인 경우 포괄적 세율은 33%(=0.5÷1.5)이며, 배제적 세율은 50%(0.5÷1.0)임

- 증가세 과세방식에서의 세율이 인상될 때,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알코올 단위당 세후가격(BPPE)은 증가하여 단기 소비량은 감소할 수 있음
 - 생산자에게는 알코올 단위당 가격과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양조기간의 단축이나 포장질의 저하 등 불필요한 품질요인을 낮출 유인이 발생하여 낮은 품질의 주류 생산이 장려됨
 - 알코올 함량을 높이거나, 품질의 가치를 높이려는 생산자의 시도는 가격의 인상효과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증가세 부담이 증가함⁷⁷⁾
 - 장기적으로 알코올 단위당 인식되는 품질의 감소로 인해 주류가격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됨⁷⁸⁾
 - 결과적으로 알코올 함유량이 높지만 낮은 품질의 저가 음료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시키므로, 소비량 증가에 따른 세수입의 증대가 가능함

- 증가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음⁷⁹⁾
 - 과세표준이 제품의 판매가격이므로 해당 제품이 사치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 반면, 증가세 과세방식은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위적인 과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주류 수입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조정하거나, 생산자가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유인이 있음
 - 그리고 세정상 가격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개발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실이나 생산자 이윤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음

77)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함(Sornpaisarn et al., 2017, p. 33)

78) 품질인하(downgrading effect)라고 함((Sornpaisarn et al., 2017, p. 34)

79) Richupan(2005), p. 39.

〈표 III-1〉 균일과세 방식(uniform taxation)에서의 과세방법별 비교

구분	균일과세 방식(uniform taxation) 과세방법		
	종량세 과세방식	단일과세 방식	증가세 과세방식
과세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당 알코올 함량	주류 부피(용량)	주류 가격
과세 역할	알코올 함유량만 조세비용과 관련됨	컨테이너 크기만이 조세비용과 관련됨	품질향상 및 알코올 함유량 증가가 조세비용과 관련됨
세율인상시	생산자 조정에 대한 장기적 효과	저알코올· 고품질 주류 생산	다양한 품질의 고알코올 주류 생산
	주류 소비에 대한 세후 BPPE 효과	세후 BPPE 증가, 총소비 감소	세후 BPPE 하락 가능, 총소비 증가(장기)
	장기적 세수효과	세수입 증가	세수입 증가 가능
장점	·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 · 다양한 제품개발 유인 · 주류 품질 향상	· 고알코올 또는 다양한 주류제품 생산 유인 · 조세징수 용이	·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중립성 유지
단점	· 저가주류 소비층에게 역진적 효과 발생 · 인플레이션 시 실질적 세수입 감소	· 인플레이션 시 실질적 세수입 감소	· 가격조정을 통한 조세회피 용이 · 품질 저하

주: BPPE는 알코올 단위당 주류 가격(beverage price per unit of ethanol)임
 자료: Sornpaisarn et al.(2017), p. 35, Table 3.1을 정리

나. 결합과세 방식

- 결합과세 방식(combination taxation)은 일반적으로 종량세 과세방식과 증가세 과세방식을 결합하여 주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주세부담 최저액을 고려하여 과세방식의 부담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하거나 증가세 방식의 세율을 적용함
- 전자는 종량세와 증가세의 병행적용 결합방식(mixed specific and ad valorem taxation, MSA)으로 EU 담배세 과세방식에서 주로 나타남⁸⁰⁾

- 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이원적용 결합방식으로 특정 최저한도 종가세 방식 (ad valorem with specific floor taxation, ASF)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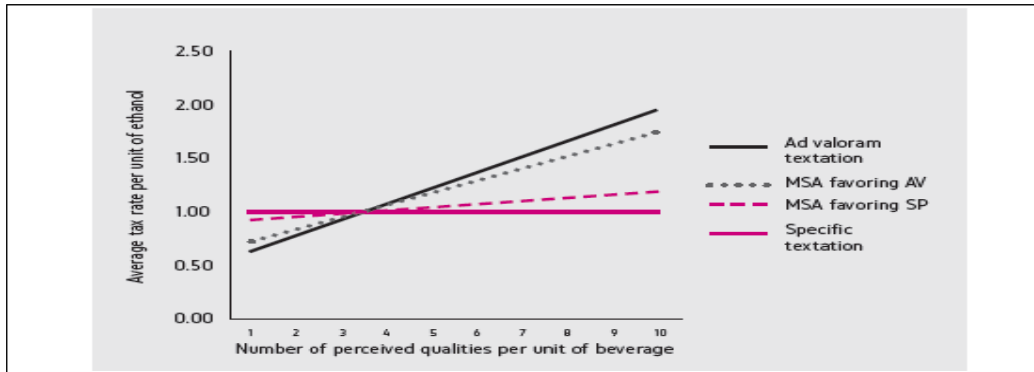
1) 종량세와 종가세 병행적용 결합과세 방식(MSA 결합과세 방식)

- MSA 결합과세 방식은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방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과세방식하의 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짐
 - 두 가지 과세방식의 특징을 결합하기 때문에 중간수준 알코올성 음료(medium alcoholic content beverages)의 생산을 촉진함
- 알코올 단위당 인지된 품질에 대한 알코올 단위당 평균 주세율을 살펴보면, 종가세, 종가세에 가까운 MSA 결합과세(종가 MSA), 종량세에 가까운 MSA 결합과세(종량 MSA), 종량세의 순으로 평균세율의 기울기가 작아짐
 - 종량세는 품질에 관계없이 알코올 단위당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고, 종가세는 알코올 단위당 인지된 품질에 따라 세액이 부과됨
 - 종량 MSA 결합과세 방식은 종량세와 유사하며, 생산자로 하여금 주류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알코올 단위당 주류가격(BPPE)의 인상을 통한 알코올 소비의 감소 효과가 일어남
 - 종가 MSA 결합과세 방식은 종가세와 유사하게 주류 품질이 높을수록 알코올 단위당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생산자로 하여금 품질을 낮추거나 알코올 함량을 높여, 장기적으로 알코올 단위당 주류가격을 낮추면서 알코올 소비의 증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80) Sornpaisarn et al.(2017), p. 36.

81) WHO의 담배세에 대한 기술 매뉴얼에서 결합과세 방식을 이와 같이 구분함(WHO, 2010; Sornpaisarn et al.(2017), p. 36 재인용)

[그림 III-1] 알코올 단위당 세율 비교: 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



주: 그래프 옆 오른쪽 선의 명칭은 위에서부터 각각 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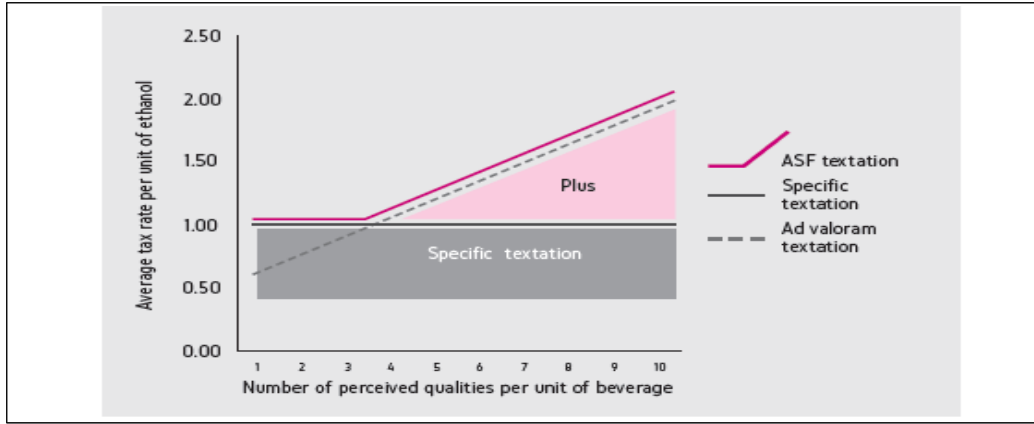
자료: Sornpaisarn et al.(2017), p.37. Fig. 3. 1.

2) 종량세와 종가세 이원적용 결합방식(ASF 결합과세 방식)

- ASF 결합과세 방식은 최저한도를 고려한 종가세(ad valorem with specific floor taxation)와 유사함
 -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주류일수록 종가세 세율이 종량세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ASF 결합과세 방식하의 세율은 종가세의 그것과 유사함
- 한편 ASF 결합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방식 사이의 영역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종량세 기반 과세(specific-plus taxing)로도 간주됨
 - 종량세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ASF 결합과세 방식은 평균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 저알코올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 과세방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음⁸²⁾
 - 반면, ASF 결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는 비싼 주류 카테고리에서 고품질주류를 생산할 인센티브가 없고, 고품질·고가 주류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음

82) Sornpaisarn et al.(2017), p. 39.

[그림 Ⅲ-2] 알코올 단위당 세율 비교: ASF 결합과세, 종량세, 증가세



주: 그래프 옆 오른쪽 선의 명칭은 위에서부터 각각 ASF 결합과세, 종량세, 증가세를 의미함
 자료: Sornpaisarn et al.(2017), p. 39, Fig. 3. 2.

다. 요약

- 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의 세수입 확보 외에도 공중보건 측면⁸³⁾에서의 위험 음주로 사회적 비용 축소 및 저연령 소비자의 음주개시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가 고려됨⁸⁴⁾
- 본문에서는 세수입 확보 및 음주소비 통제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효과에 대해 과세방법별로 살펴봄⁸⁵⁾
 - 종량세 과세는 음주소비 감소와 함께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저연령 소비자의 저알코올 음료 개시가 용이할 수 있음
 -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제품의 수량과 관련된 외부효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선호됨

83) 위험음주 해소를 위한 WHO 공중보건정책에 대해서는 정영호 외(2014, pp. 99~103)을 참조할 것

84) Sornpaisarn et al.(2017), p. 41.

85) Sornpaisarn et al.(2017), p. 42.

- 단일과세는 세수입의 증가와 함께, 고알코올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음주소비 감소 및 저연령 소비자의 음주개시를 예방하지 못함
- 종가세 과세는 세수입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총알코올 소비 증가와 저연령 소비자에 의한 저가 주류의 음주개시가 용이할 수 있음
 - 생산자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과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는 곳에서 보다 선호됨
- MSA 결합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요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중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음
 - MSA 결합과세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류의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음주소비의 통제에 있어서는 종량세보다 덜 효과적임
 - MSA 결합과세는 저알코올 함량 음료에 대해 종량세 과세방식보다는 주세부담이 높을 수 있음
- ASF 결합과세는 음주소비의 감소와 저연령 소비자의 음주개시 예방에 효과적이며, 종량세와 비교하여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 ASF 결합과세는 저알코올 주류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고가 주류가 가격탄력적인 경우 종량세에 비해 세수입이 낮아질 수 있음

2. 과세방법과 세율결정에 대한 주종별 동질성

- 주세 과세체계의 복잡성 여부는 주종별 과세방법상의 동질성(Homogeneity)과 세율결정의 동질성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조세체계는 아래와 같음⁸⁶⁾
 - 모든 종류의 주류에는 한 가지 유형의 과세방법과 균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주류에는 한 가지 유형의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주종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86) Sornpaisarn et al.(2017), p. 39.

- 예를 들어, EU 회원국은 종량세 과세방식하에서 주종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태국은 모든 종류의 주류에 대해서는 ASF 결합과세 방식을 사용하지만 주종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함
- 주종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법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함
 - 예를 들어, 호주는 맥주와 증류주는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와인은 증가세 과세방식으로 하여 29%의 세율을 적용함
 - 중국의 경우에도 증류주인 백주는 ASF 결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맥주는 종량세로 공장출고가격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주류에 대해서는 증가세 과세방식으로 10%의 세율을 부과함
- 모든 종류의 주류에 한 가지 유형의 과세방법과 균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 선택의 정책상 배경은 아래와 같음
 -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주종에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높은 세율은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는 소비자에게 더 큰 소비자의 후생 손실을 유발함⁸⁷⁾
 - 소비자는 세율이 낮은 주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차이로 인한 주종별 대체효과가 발생함
 - 음주로 야기되는 외부불경제의 축소방안으로 조세 외 음주억제정책을 이용함
- 주종별 서로 다른 과세방법과 차별적인 세율을 취하는 국가의 정책상 배경으로는 음주소비의 억제, 사치재에 대한 누진도 강화, 제조원가 비중에 따른 과세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전통주인 백주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주류정책과 같이 특정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
 - EU 회원국과 같이 자산가 또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명품 주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량세액 부과는 누진도의 정당성에 근거함

87) Sornpaisarn et al.(2017), p. 40.

- 상대적으로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 제조원가가 낮은 증류주에 대한 높은 세율의 적용은 다른 주류와 일치하는 알코올 단위당 가격을 이룰 수 있음
- 만일 정부가 주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생산 기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종별 과세방식과 세율결정의 동질성을 유지할 당위성은 줄어들음

3. 기타 고려사항

- 주류 가격결정 및 주세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고려사항을 본문에서 간략하게 살펴봄

가. 최저가격⁸⁸⁾

- 알코올 단위당 최저가격(minimum price)은 지정가격 이하로 소비자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의 주류 가격정책 중 하나임
 - 주류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가격정책에 해당함
 - 저가 주류의 가격은 최저가격의 도입 이후에 증가할 것이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의 동일한 제품을 관찰하기 때문에 음주소비가 감소할 수 있음
 - 저가 주류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음주소비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
- 최저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예시로는 캐나다와 스코틀랜드가 있음⁸⁹⁾
 -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별로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음주소비 및 알코올 중독자의 병원 입원이 감소했다는 실증연구가 있음⁹⁰⁾
 - 캐나다 10개 주 중에서 8개 주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음

88) Sornpaisarn et al.(2017), p. 41.

89) 각 국가별 최저가격제의 자세한 내용과 효과는 조흥준 외(2014), pp. 156~169를 참조할 것

90) Stockwell and Thomas(2013), p. 11.

- 스코틀랜드는 알코올 최저가격법⁹¹⁾을 2012년 최초 도입하였으나 스코틀랜드 주류업협회의 소송으로 유보되었다가 2018년 5월 1일부터 발효함⁹²⁾
 - 알코올당 50펜스 최저가격이 적용됨

- 일본은 최저가격제와 유사한 총판매원가 이하 판매금지(「주류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함⁹³⁾
 - 주세의 보전 및 주류 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세법」 및 「주세 보전 및 주류 산업 협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주류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주류의 저가판매를 포함하여 리베이트를 이용한 소매상의 주류판매 관행의 개선이 제도시행의 주된 목적임
 - 시행 이전 맥주는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의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출하한 맥주는 리베이트와 함께 소매상으로 납품되고 소매상은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재원으로 하여 저가판매 및 판촉행위를 수행함⁹⁴⁾
 - 총판매원가는 매출원가(제조원가 + 운송비 등 부대비용) 및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이고, 판매관리비는 주류 판매활동에 소요된 직·간접비를 의미함

- 유럽 내에서는 과거 유럽법원이 최저가격제도가 무역거래의 왜곡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저한의 주류가격통제를 위해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함⁹⁵⁾

91) Alcohol(Minimum Pricing)(Scotland) Act 2012.

92) 스코틀랜드 정부, <https://www.mygov.scot/minimum-unit-pricing/>, (검색일자: 2018. 5. 18.)

9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ake/koseitorihiki/tokusyu201604/qa_torihiki_kijun.pdf, (검색일자: 2018. 5. 18.)

94)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5>, (검색일자: 2018. 7. 18.)

95) 요식업 주류판매(on-premise trade)의 경우 독일은 무알코올 음료의 가격은 최저가 주류보다 더 저렴해야 하고, 스위스에서는 동일한 용량의 최저가 주류보다 적어도 세 가지 무알코올 음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Rabinovich et al., 2009, p. 90.)

나. 무역협정⁹⁶⁾

- 주류수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관세의 폐지는 수입주류의 가격하락과 판매촉진이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음주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⁹⁷⁾
 -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의해 각 회원국이 합의한 경계 수준까지 허용되지만,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약정을 통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취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류정책은 무역협정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WTO 협정과 조세조치(taxation measures)가 연관될 수 있는 분쟁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등의 차별금지 원칙이 있음
 - 국경 간(cross-border) 상품·서비스·자본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완화를 위한 통상·투자조약과 재정의 확보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주세 조세정책을 포함한 행정조치는 서로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류(조세)정책은 WTO 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데, 과거 칠레, 일본 및 한국에서 국내주류제조사에게만 적용되는 세제지원 제도가 WTO 분쟁 결과 폐지된 사례가 있음⁹⁸⁾

- 그러나 자국 내 공중보건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상 의무인 차별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주류정책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님

96) Sornpaisarn et al.(2017), p. 67.

97) Sornpaisarn et al.(2017), p. 67.

98) Sornpaisarn et al.(2017), p. 68.

- GATT 제20조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등의 경우에는 협정상 의무적용을 배제토록 함
 - 다만, 관련 정책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또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건강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저한의 무역제한조치’⁹⁹⁾를 의미함
- 주류정책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더 중점을 두고 입안하는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음¹⁰⁰⁾

99) Sornpaisarn et al.(2017), p. 68.

100) Sornpaisarn et al.(2017), p. 68.

IV.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 제IV장에서는 OECD 회원국과 종가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세율 과세제도를 살펴봄

-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는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호주는 포도주에 대해서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함
 - 터키는 종량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액을 최저한세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은 소규모 맥주제조업에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 경감세율을 적용함¹⁰¹⁾

- 대부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이 OECD 회원국에 해당하므로¹⁰²⁾, 우선 EU의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지침(Directive)과 EU 회원국의 주세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봄

101) OECD(2016), pp.133~135

102) OECD 회원국 23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해당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나머지 11개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미국임

- EU 회원국이 아닌 OECD 회원국 중에서 종가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터키, 멕시코, 호주(와인)와 과거 WTO 분쟁 이후 전격적으로 종가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을 조사함
-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종가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중국(주정 및 기타주류), 베트남, 태국의 주세제도를 추가로 조사함

〈표 IV-1〉 OECD 회원국의 주세 과세방식 및 맥주 경감세율 적용 현황

국가	종가세 적용 여부 ¹⁾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여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경감세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²⁾
호주	△ (포도주만 종가세)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캐나다	×	○	○
칠레	○	×	×
체코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	○	○
이스라엘	×	×	○
이탈리아	×	×	○
일본	×	○	×
대한민국	○	○	×
라트비아	×	○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

국가	종가세 적용 여부 ¹⁾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여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경감세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²⁾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키	△ (맥주만 종가세)	×	×
영국	×	○	○
미국	×	○	×

주: 1. ×는 모든 주류에 종량세로 과세하는 경우, ○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과세하는 경우, △는 일부는 종가세로 그 외 주류는 종량세로 과세하는 경우를 나타냄
 1)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단일과세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으로 작성
 2)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에도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작성
 자료: OECD(2016), pp. 131~141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EU

□ 모든 EU 회원국은 EU 지침에 의한 주세율을 최저한으로 하여 주세를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하여 운용하는데, 본문에서는 EU 지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회원국별 맥주에 대한 주세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봄

가. EU 지침

□ EU는 회원국 간의 유해한 조세경쟁과 국경 간 무역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엄격하게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세(이하 주세)를 규율함

-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침(Directive 92/83/EEC)이 채택됨¹⁰³⁾
- 유해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세에 대한 최저한세를 설정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최저한세와 같거나 더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Directive 92/84/EEC)
 - 문화·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와인(wine)과 같은 특정 알코올 소비에 대해서는 감면을 부여함(Directive 92/83/EEC)¹⁰⁴⁾
- 주류에 대한 EU 지침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EU 회원국의 주세 과세체계는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있었는데, 유럽시장 단일화 이후 증가하는 주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회원국 간 경쟁적인 세율인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임¹⁰⁵⁾
 - 그러나 회원국 간 주세 과세체계의 완전한 일치(full harmonization)는 이루지 못하고 각 주종별 최저세율(minimum excise duty rate)의 형태로만 채택됨
 - 주류 소비패턴을 포함하여, 국가에 의한 전매여부나 음주로 인한 외부비용은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적 주세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1992년 도입 후 현재까지 최저한세는 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2006년 기준 실질적인 가치는 30%정도 인하되었다고 보고함¹⁰⁶⁾

103) Directive 92/83/EEC은 EU 내 유해한 조세경쟁의 방지 및 회원국의 효과적인 주류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 구조, 과세대상, 소비세 계산구조, 제조장 및 소규모 제조장, 특정 제품 및 지역에 대한 할인을 등을 규정함. 본 지침의 개정작업은 2017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음

104) 1995년 7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유럽 외 지역으로부터 저가 와인이 EU 지역으로 수입됨에 따라 EU 회원국 일부에서는 와인에 대한 주세를 저율 또는 0으로 개정함(Barbor et al., 2010, p. 92)

105) Rabinovich et al.(2009), p. 89.

106) Rabinovich et al.(2009), p. 9.

〈표 IV-2〉 EU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주세 최저한세

(단위: ℓ, 유로)

과세대상 품목	과세단위	최저한세
맥주	맥아즙 당농도 100/알코올도수 100	0.748/1.87
와인(증류 및 발포주 포함)	100	0
중간생산물(포트와인, 세리주)	100	45
증류주(Spirits)	순알코올 100	550

자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excise-duties-alcohol_en, (검색일자: 2018. 6. 12.)

- EU 회원국 간 주세제도는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EU의 주세 체계에 대한 지침(Directive 92/83/EEC)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임¹⁰⁷⁾
 -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증류주에 적용되는 세율이 가장 높고, 중간생산물, 와인, 맥주의 순으로 세율이 낮아짐
 - 와인의 경우 남부 및 중부유럽에 위치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국가들은 맥주나 증류주에 대해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남유럽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¹⁰⁸⁾
 - 종량세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완화하고자 일부 EU 회원국들은 연동제를 적용함¹⁰⁹⁾
 -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연동제를 적용하고, 연동제를 미도입한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은 일정주기별로 세율을 인상함

107) 주종별 세율은 부록 'EU 회원국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 for alcoholic beverages) 표준세율'을 참조할 것

108) Trasberg(2015), p. 6.

109) 성명재(2017), pp. 90~92.

나. EU 회원국별 맥주 주세제도

- 맥주에 대한 주세 표준세율은 역시 EU 회원국 자국 내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U에서 규정한 최저한세인 알코올 환산 100ℓ 당 0.748유로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최고 47.48유로인 경우도 있음
 - 루마니아(0.7193유로), 불가리아(0.7669유로), 독일(0.787유로), 룩셈부르크(0.7933유로)는 표준세율이 1유로 이하로 거의 최저한세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핀란드는 35.55유로, 네덜란드는 최대 47.48유로로 표준세율이 EU 회원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준세율 구간이 1유로 이상 10유로 이하인 국가는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프랑스, 덴마크가 있음
 - 표준세율 구간이 10유로 이상 30유로 이하인 국가는 슬로베니아, 스페인¹¹⁰⁾, 에스토니아,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이 있음
 - EU 회원국은 연간 생산량이 200,000 헥토리터(hectolitres)를 초과하지 않는 독립형 양조장에서 양조한 맥주와 실제 알코올 도수가 2.8% 이하인 맥주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대부분 회원국들은 알코올 함량(또는 맥아즙 당도)별로 단일한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 알코올 도수별로 종량세율을 달리 정함
 - 스페인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2.75유로, 최대 13.56유로를 부과함
 - 영국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21.5788유로 또는 28.014유로를 부과함
 - 네덜란드는 맥주의 맥아즙 당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8.83유로, 최대 47.48유로를 부과함

110) 스페인의 경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최저 2.75유로, 최대 13.56유로를 부과함

- 포르투갈은 맥아즙 당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10.44유로에서 최대 29.3유로를 부과함

〈표 IV-3〉 EU 회원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표준세율(2018년 1월 기준)

(단위: 100 l, 유로)

국가	구분		국가	구분	
	맥아즙 당	알코올도수		맥아즙 당	알코올도수
EU 최저한세	0.748	1.87	아일랜드	-	22.55
오스트리아	2	-	이탈리아	3.02	-
벨기에	2.0043	-	리투아니아	-	7.11
불가리아	0.7669	-	룩셈부르크 ²⁾	0.7933	-
키프로스	-	6	라트비아 ³⁾	-	4.5
체코	1.231	-	몰타	1.93	20.5
독일	0.787	-	네덜란드 ⁴⁾	8.83~47.48	-
덴마크	-	7.5277	폴란드	1.8061	-
에스토니아	-	15.52	포르투갈 ⁵⁾	10.44~29.3	-
그리스	5	-	루마니아	0.7193	-
스페인 ¹⁾	0.91	2.75~13.56	스웨덴	-	21.0296
핀란드	-	35.55	슬로베니아	-	12.1
프랑스	-	7.42	슬로바키아	-	3.587
크로아티아	-	5.3355	영국 ⁶⁾	-	21.5788/28.014
헝가리	-	5.2016	-	-	-

주: 적용환율은 각각 다음과 같음. 불가리아(BGN)-1.9558, 크로아티아(HRK)-7.497, 체코(CZK)-25.995, 덴마크(DKK)-7.4418, 헝가리(HUF)-311.44, 폴란드(HUF)-4.3132, 루마니아(RON)-4.5878, 스웨덴(SEK)-9.6055, 영국(GBP)-0.8842.

- 1) 스페인은 맥주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2.75유로, 최대 13.56유로를 부과함
- 2) 룩셈부르크는 맥주, 와인, 발효주 등 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의 혼합제품에 대해서는 100리터당 600유로의 추가세금이 부과됨
- 3) 라트비아는 2020년까지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최대 8.1유로(맥주)까지 인상할 예정임
- 4) 네덜란드는 맥주의 맥아즙 당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8.83유로, 최대 47.48유로를 부과함
- 5) 포르투갈은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맥아즙 당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10.44유로에서 최대 29.3유로를 부과함
- 6) 영국은 맥주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21.5788유로 또는 28.014유로를 부과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2. 일본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일본의 맥주 공급량은 360만톤으로 2005년 367만톤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365만톤, 360만톤으로 대상기간 중 소폭 감소하였음
 - 일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맥주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발포주, 제3맥주와 같은 유사 맥주류의 성장과 저알코올 음료의 강세에 의해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¹¹¹⁾
- 2005년과 2013년 맥주 수출량은 각 1.8만톤과 4.7만톤으로 대상기간 중 약 160% 증가함
- 대상기간 중 맥주의 수입량은 2011년에 정점을 찍은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2015년, 2016년의 연도별 맥주 수입량은 각각 39,518kl, 38,146kl, 36,372kl임¹¹²⁾
- 일본은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Kirin, Asahi)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일본 국내제조 맥주시장의 약 72.7%(2015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음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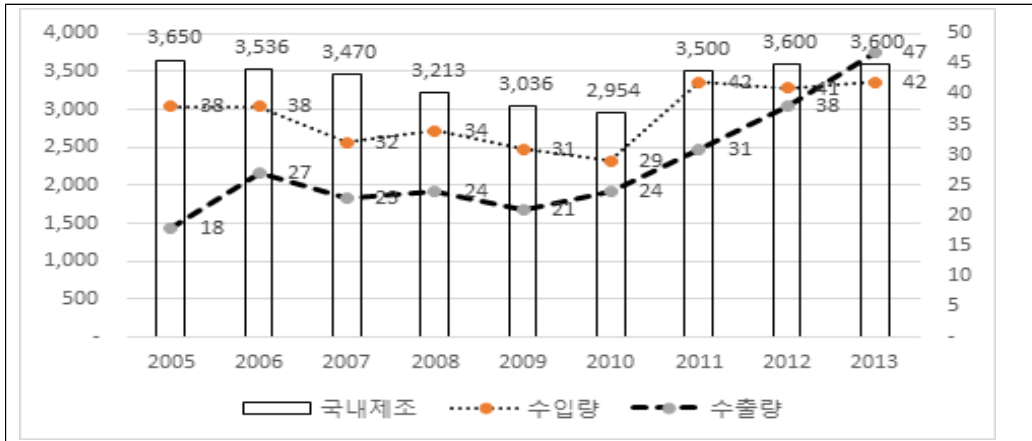
111)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p. 28~29.

112)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 77.

113)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p. 31~32.

[그림 IV-1] 일본맥주의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나. 주세제도

1) 개요

- 일본에서 판매되는 주류에는 8%의 소비세(Consumption tax)와 주세가 부과됨
- 일본 「주세법」상 과세대상은 크게 4종류로 분류되며¹¹⁴⁾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¹¹⁵⁾
 - 주류는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및 혼성주류로 분류됨
 - 일본은 주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이는 다시 18종으로 세분함

114) 일본 「주세법」 제2조

115) 일본 「주세법」 제6조

〈표 IV-4〉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분류

구분	세부내역
발포성주류	맥주, 발포주, 기타 발포성주류(알코올분 10도 미만의 주류로 발포성을 가진 것)
양조주류	청주, 과실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류	연속식 증류 소주, 단식 증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 알코올, 스피리츠
혼성주류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어, 분말주, 잡주

자료: 일본 「주세법」 제3조

- 일본은 종량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율은 주종별로 20,000엔(미림)부터 390,000엔(분말주)까지 다양함
 - 일본은 전반적으로 알코올분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함
 - 특히, 증류주류와 혼성주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준 알코올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증과세율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대중주이며 저도주인 맥주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재는 대중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 당시 맥주가 고가의 수입품으로 인식되었던 점으로 인해 맥주의 세율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¹¹⁶⁾
 - 추가적으로 맥주가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주세의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감안되었다는 주장도 있음¹¹⁷⁾
- 2017년 「주세법」 개정에서는 특히 맥아비율 및 첨가물에 따라 세분되어 있던 맥주류의 주세율을 일원화한 점과 「주세법」상 맥주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¹¹⁸⁾¹¹⁹⁾
 - 일본은 맥아비율에 따라 맥주류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개정을 통해 맥주류의 주세율을 일원화함

116) Omura(2014) p. 8.

117) Omura(2014)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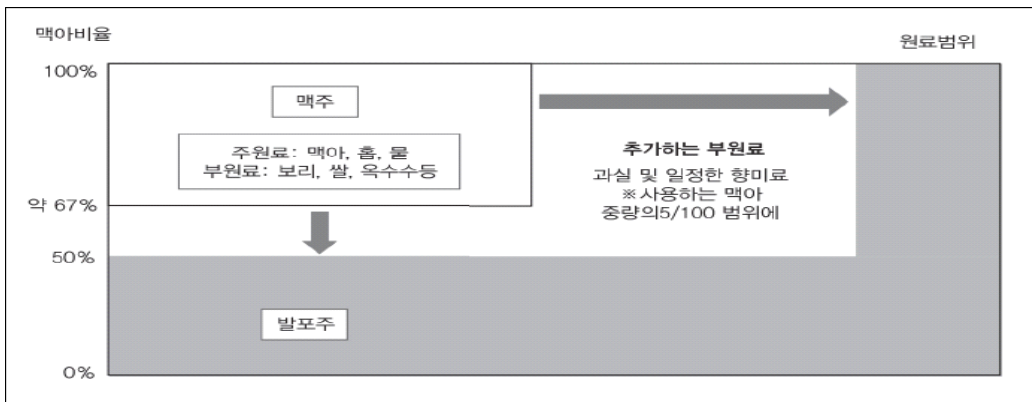
118)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 11.

119) Otsuka(2018), p. 2.

- 개정 이전의 일본맥주 제조회사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발포주 또는 제3맥주 등의 개발에 주력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함
- 세부담의 공정성 도모, 일본 국내맥주의 수출장려 및 시장경쟁 왜곡에 따른 세수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맥주류의 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함
- 2018년 4월부터 「주세법」상 맥주의 맥아비율을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분류와 세율을 일치시켜 「주세법」상의 맥주 범위를 확대함¹²⁰⁾
- 기존 일본 「주세법」상 맥주는 원료를 홉 및 보리 등에 한하며 맥아의 비율도 67% 이상인 것이었으나, 맥아비율이 67% 이하여서 ‘발포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맥아비율이 50% 이상이면 맥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음

[그림 IV-2] 일본 「주세법」상 맥주의 정의 개정사항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 5.

-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양조주류의 세율을 점차적으로 일원화하였고, 2017년 「주세법」 개정에 따른 주세율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시행될 예정임
- 청주와 와인 제조과정 및 소비양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와인은 청주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7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청주의 세

12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p. 11~12.

율은 낮추고 와인의 세율은 높여 세율을 일원화함¹²¹⁾

〈표 IV-5〉 현행 일본 주세율과 예정 변경세율

(단위: 1ℓ당 세율)

구분		현행 (2018.4.1.~)	경과조치기간		2026.10.1.~
			2020.10.1.~	2023.10.1.~	
발포성주류	맥주	맥아비율 50% 이상	220,000엔	200,000엔	181,000엔
	발포주	맥아비율 25~50%	178,125엔	167,125엔	155,000엔
		맥아비율 25% 미만	134,250엔		155,000엔
	기타	제3맥주 등	80,000엔	108,000엔	
기타		80,000엔		100,000엔	
양조주류	청주	120,000엔	110,000엔	100,000엔	
	과실주	80,000엔	90,000엔		
	기타 양조주	140,000엔	120,000엔		
증류주류	연속식 증류소주, 단식 증류소주, 원료용 알코올	200,000엔(알코올분 21도 미만 기준) [알코올분 1도 초과당 10,000엔 가산]			
	위스키, 브랜디, 스피리츠	370,000엔(알코올분 37도 미만 기준) [알코올분 1도 초과당 10,000엔 가산]			
혼성주류	합성청주	100,000엔			
	미림	20,000엔			
	감미과실주, 리큐어	120,000엔(알코올분 13도 미만 기준) [알코올분 1도 초과당 10,000엔 가산]			
	분말주	390,000엔			
	잡주	알코올분 21도 미만 기준	220,000엔	200,000엔	
알코올분 1도 초과당 가산액		11,000엔	10,000엔		

주: 1. 기타 발포성 주류(기타)는 홉 또는 일정 고미료를 원료로 하지 않는 주류(예-츄하이)를 의미함
 2. 증류주류와 리큐어 중 저도주(증류주류 13도 미만, 리큐어 12도 미만)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 제82조의2에 의하여 경감세율(알코올분 9도 미만 기준 80,000엔, 알코올분 1도 초과당 10,000엔 가산)을 적용함.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알코올분 11도 미만 기준 100,000엔(알코올분 1도 초과당 10,000엔 가산)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자료: 일본 「주세법」 제23조; 日本国税庁(2017), p. 3; Otsuka(2018), pp. 3~4.

121) 참고로, EU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이 2017년에 체결됨에 따라 2019년부터 EU산 와인에 적용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pp. 11~12)

2) 기타 주류행정

- 일본은 「주세법」 및 「주세 보전 및 주류 산업 협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 「주류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2017년 6월부터 주류의 할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¹²²⁾
 - 주류 소매업자는 제조사 또는 도매업자와의 거래조건 교섭을 통해 받은 리베이트¹²³⁾를 재원으로 하여 주류를 할인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2017년 6월부터 주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총판매원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없음
 - 여기서 총판매원가는 매입원가에 인건비 및 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본 규제는 대형 슈퍼마켓 및 할인매장의 할인판매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 주류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판매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할인판매 규제 시행 결과, 평소 리베이트가 많았던 맥주류의 가격이 인상되고 판매가 다소 침체됨
 - 시행 직후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맥주류의 가격이 10% 정도 인상되었으며 맥주 이외의 주류(예-청주, 와인, 위스키) 등도 소폭 인상됨
 - 할인판매의 규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된 맥주류의 판매는 침체된 반면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저알코올 음료의 인기가 높아졌음
 - 대형판매장의 매출은 감소되었으나 평소 할인판매를 거의 하지 않던 편의점의 매출이 증대됨. 그러나 기대하였던 일반 주류판매점의 매출증가효과는 없었음

122)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p. 3~16.

123) 리베이트란 제조사가 일정 수량을 판매한 소매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의 의미하며, 판매량이 많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맥주류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제조사 측에서는 본 할인판매규제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도매·영업용 주류판매점도 거래적정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음
 - 반면 대형할인매장 등의 경우 어려움을 겪지만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1989년 주세 과세방식의 전환(증가세와 종량세 병행→종량세)¹²⁴⁾

- 일본은 1989년 이전까지는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와 증가세 방식을 병행하여 주세를 부과함
 - 일본은 고가주에는 높은 세부담, 저가주에는 낮은 세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동일 주류 내에서도 등급이나 품질 또는 가격에 의해 세분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음
 - 과세방식은 종량세를 기본으로 하되, 특급 청주, 위스키류 등의 일부 고가술에 대해서는 종량·증가세 병용방식을 채택하여 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1980년대 EC가 제기한 GATT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988년 12월 주세의 전격적인 개혁을 통해 1989년 4월부터 주류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¹²⁵⁾¹²⁶⁾
 - 1989년 이전에는 종량세를 기본으로 하되, 청주 특급 위스키류 등의 일부 고가술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증가세 과세방식을 병용함
 - 1987년 2월 EC는 일본의 주세제도가 고급 수입품에 부당과세하여 일본 자국기업을 보호하였다 하여 GATT에 소송을 제기함
 - GATT는 EC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에게 위스키, 브랜디, 기타 증류주, 리큐르, 스파클링 와인, 와인(still wine)의 주세 과세체계를 GATT 의무에 부합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함

124) 이하에서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柴田忠(1989a), pp. 200~206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125) 백진욱(2009). pp. 41~42.

126) 柴田忠(1989a), p. 200.

- 일본은 1989년 4월에 GATT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증가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격적인 「주세법」 개정을 시행함

가) 전환 배경

- 과거 고급술로 분류되었던 맥주와 특급 위스키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주류의 제조 기술 향상과 수입주류의 증가 등 주류의 공급양태 및 소비성향이 바뀜에 따라 기존 주세 과세방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본 내에서 진행됨
 - 고급주로 분류되던 맥주가 대중주로 변모된 것과 같이 주류 소비양태가 변화됨
 - 일본세계조사사회에서는 1985년 10월에 각 주류별 생산, 소비양태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주세제도의 개편을 제안함
- 한편, 1987년 2월 EC는 일본의 주세제도가 고급 수입품에 부당과세하여 일본 자국기업을 보호하였다고 GATT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GATT가 EC의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EC가 승소함
 - GATT는 EC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본에게 위스키, 브랜디, 기타 증류주 등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GATT 의무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함
- GATT의 권고에 따라 일본은 1988년 12월 30일 법률을 개정하여 1989년 4월부터 주세 과세제도를 전격적으로 개편·시행함
 -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단순한 세제를 목표로 개편함

나) 1989년 4월 주세 주요 개편내용

- 주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함
 - 기존 증가세 과세방식은 상품의 가격인상에 저해요인이 되며 특정 주류에만 불

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음

- 한편, 일본은 198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3% 세율)를 도입할 예정이었음
- 이에 일본경제조사사회에서는 1988년 4월 “세계 개혁에 대한 중간 답신”에서 주류를 새로운 ‘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현행 종가세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일본은 1989년 4월부터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 방식으로만 과세함

□ 급별 제도를 폐지함

- 과거 청주와 위스키류에 대해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함
-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종가세 체계를 운영함
- 그러나 술 소비의 다양화, 전 등급 주류의 품질 향상, 수입 주류에 대한 실질적 차별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를 폐지하였음

□ 주류 간의 세부담 격차를 축소함

- 주류 간의 세부담 격차 축소를 위해서 각 주종의 종량세율을 개정함
- 청주, 와인(과실주), 위스키, 맥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졌으나 소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되었음

〈표 IV-6〉 일본 1989년 4월 1일 전·후 주세 과세체계

구분		1989년 4월 1일 이전				1989년 4월 1일 이후		
		종량세		증가세		종량세		
주종	등급	알코올분	세율 (엔/kl)	비과세 한도액 (엔/ℓ)	세율 (%)	알코올분	세율 (엔/kl)	
		청주	특급	15.0	570,600	710	150	15.0
1급	15.0		279,500	-	-			
2급	15.0		107,900	-	-			
소주	갑류	25.0	78,600	-	-	25.0	119,800	
	을류	25.0	50,900	-	-	25.0	70,800	
미 립	혼미립	-	13.5	74,100	-	-	13.5	21,600
	혼나오시	-	22.0	63,500	-	-		
맥주		-	-	239,100	-	-	-	208,400
과 실 주 류	과실주	엑기스분 7도 이상	-	159,800	1,080	50	-	46,300
		1ℓ 당 450엔 초과	-	60,400				
		그 외	-	49,700				
	감미과실주	-	12.0	117,300	870	50	12.0	85,000
위스키류	특급	43.0	2,098,100	1,400 1,950	150 220	40.0	982,300	
	1급	40.0	1,011,400	1,100	100			
	2급	37.0	296,200	570	65			
스피리츠	위스키류유사	37.0	296,200	-	-	37.0	331,400	
	그 외	37.0	361,800	540	100			
리큐르	알코올분 15도 이상, 엑기스분 21도 이상	15.0	367,000	1,230	100	12.0	85,000	
	그 외	12.0	117,300	1,230	50			

주: 1. 개정 후 위스키류의 경우 43도의 세율은 1,055,980엔으로 하고 37도의 세율은 908,600엔으로 함

2. 개정 후에는 전 주종을 대상으로 3%의 소비세율을 부과함

자료: 柴田忠(1989a), p. 204.

- 1989년 세법개정으로 대부분 주류의 경우 주세부담이 감소함¹²⁷⁾
 - 예를 들어 1급 청주의 경우 주세율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약 13% 감소함
 - 1급 청주: 기존 279,500엔/ℓ, 개정 후 133,700엔/ℓ
 - 맥주: 기존 239,100엔/ℓ, 개정 후 208,400엔/ℓ

- 그러나 세부담이 증가하는 영세 주류제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소규모 주류의 반출에 대해서는 주세율의 25%를 경감 적용함¹²⁸⁾
 - 적용대상: 청주(개정 전 2급으로 분류되었던 주류에 한정), 소주, 과실주 제조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입출수량이 1,000kl 이하인 자에게 적용됨
 - 적용물량: 각 과세연도에 출고되는 200kl 이하의 물량에 적용됨
 - 적용효과: 적용대상 주류제조업자의 상당수가 본 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용대상 주류가 전체 주세 과세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청주 제조업자 중 약 93%가 적용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3분의 2는 인출하는 수량 전체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됨

다) 1989년 주세개정 이후의 징수현황

- 1989년 세제개혁 당시 주세제도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주세 세수가 3,470억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¹²⁹⁾
 - 소비세 도입에 따른 희석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 감소세액은 1,800억엔으로 예상됨

127) 소비세(3%)가 적용됨에 따른 희석효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세율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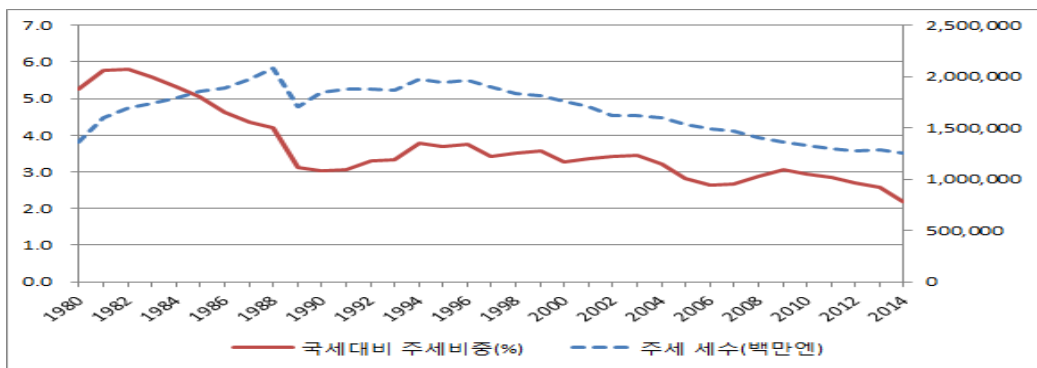
128) 柴田忠(1989b), pp. 287~288.

129) 柴田忠(1989a), p. 204.

- 실제로 1989년 세제개혁 직후 주세 세수가 급감하였으나 익년부터 소폭 회복됨
 - 1989년 주세 세수입은 1조 7,656억엔으로 전년 대비 3,192억엔 감소하였음
 - 이후 완만하게 회복하다 199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임
 - 1996년에 1조 9,561억엔까지 회복하였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함

[그림 IV-3] 일본의 주세 세수 및 국세 대비 주세 비중

(단위: %, 백만엔)



자료: 日本国税庁(2016); 이준규(2016), p. 303 재인용

- 1989년 주세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된 소주의 경우, 개정 직후에는 전체 주세 중 과세물량 점유율 및 소비총량이 급감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1989년 소주의 주세 과세물량 점유율 및 소비총량은 각각 직전 연도의 60%, 86% 수준에 그침
 - 과세물량 점유율은 1988년 8.1%에서 1989년 4.8%로 급락함
 - 소주의 소비총량은 1988년 571,000kl에서 1989년 492,000kl로 감소함
 - 1989년 주세 개정으로 소주의 세율은 인상되었으나 특히 청주, 위스키류 및 맥주의 세율은 인하되었음

〈표 IV-7〉 1989년 전·후 주종별 주세 과세물량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청주	합성 청주	소주	맥주	위스 키류	미림	과실 주류	스피 리츠	리큐어	발포주	잡주
1986년	18.6	0.3	7.8	66.5	3.5	1.1	0.8	0.3	1.0	0.0	0.1
1987년	17.8	0.3	7.1	68.3	3.3	1.1	0.9	0.2	1.0	0.0	0.1
1988년	16.9	0.3	8.1	68.2	3.5	1.0	0.9	0.2	0.9	0.0	0.1
1989년	15.8	0.3	4.8	73.0	2.3	1.1	1.0	0.5	1.3	0.0	0.1
1990년	15.7	0.2	6.6	71.6	2.1	1.0	0.9	0.5	1.4	0.0	0.1
1991년	14.9	0.2	5.1	74.1	1.9	1.1	0.8	0.4	1.4	0.1	0.2
1992년	14.6	0.3	5.9	73.9	1.8	0.9	0.7	0.4	1.5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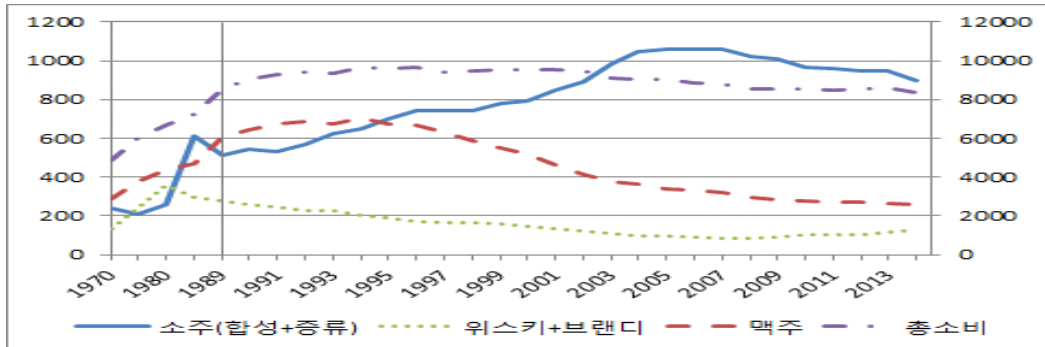
자료: 国税庁 統計情報(2016)

□ 1989년 주세개정 직전, 소주는 과세물량 점유율이 맥주, 청주에 이어 3위를 차지 하였으나 1위인 맥주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988년 기준 과세물량 점유율은 맥주(68.2%), 청주(16.9%), 소주(8.1%)순임

[그림 IV-4] 일본의 주류 판매(소비) 추이¹³⁰⁾

(단위: 천kl)



자료: 日本国税庁(2016); 이준규(2016), p.302 재인용

130) 2000년 이후 맥주의 판매물량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나 1994년 이후 「주세법」상 맥주로 분류 되지 않는 유사맥주(발포성주류로 분류되는 제3맥주, 리큐어 등)의 등장을 감안하면 맥주류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임

- 1990년대 이후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소주의 소비량 및 과세물량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은 1995년 EC·미국·캐나다가 WTO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입 위스키 등의 세율은 낮추고 소주의 세율은 인상함¹³¹⁾
 - 소주는 1995년 6.9%의 과세물량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하여 2001년에 8.0%의 점유율을 보인 이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0.0~10.9%의 과세물량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1990년대에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가 주류 중에서 여전히 저가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¹³²⁾

〈표 IV-8〉 1997년 전·후 주종별 주세 과세물량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청주	합성청주	소주	맥주	위스키류	미림	과실주류	스피리츠	리큐어	발포주	잡주
1996년	12.8	0.6	7.2	70.1	1.3	1.0	0.9	0.2	2.6	3.3	3.3
1997년	12.1	0.6	7.3	68.3	1.3	1.1	1.4	0.2	2.8	4.9	5.0
1998년	11.3	0.6	7.1	63.0	1.3	1.1	1.6	0.2	2.9	10.9	10.9
1999년	10.8	0.6	7.2	58.9	1.2	1.6	1.4	0.2	3.9	14.3	14.3
2000년	10.4	0.6	7.5	55.9	1.2	1.4	1.2	0.2	4.1	17.6	17.6
2001년	9.7	0.7	8.0	49.1	1.0	1.1	1.1	0.2	5.0	24.1	24.1
2002년	9.4	0.7	8.4	44.8	1.0	1.1	1.2	0.2	6.0	27.3	27.3
2003년	9.1	0.7	9.8	42.7	0.9	1.2	1.0	0.5	6.5	27.1	27.5
2004년	8.2	0.7	10.5	41.5	0.8	1.2	0.9	0.8	7.7	24.8	27.7

자료: 国税庁 統計情報(2016)

131) 백진욱(2009), pp. 42~43.

132) Omura(2014),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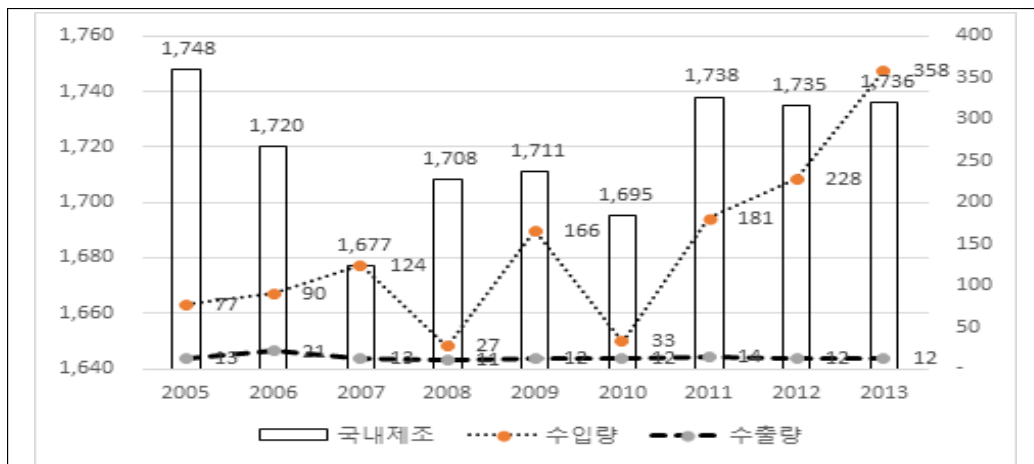
3. 호주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호주의 국내맥주 공급량은 208만톤으로 2005년 대비 14.9% 감소하였음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175만톤, 174만톤으로 대상기간 중 증가구간과 감소구간을 거쳐 2013년 기준으로는 2005년 대비 소폭 감소함
 - 맥주는 1960년대 전체 주류 소비량 중 약 75%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2016년 기준 전체 주류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함
- 2005년과 2013년의 맥주 수출량은 각 1.3만톤과 1.2만톤으로 큰 변동 없음
- 대상기간 중 맥주 수입량은 증가와 감소를 계속하다 2010년 이후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2010년, 2013년의 맥주 수입량은 각각 7.7만톤, 3.3만톤, 35.8만톤임

[그림 IV-5] 호주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나. 주세제도

- 호주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10%의 부가가치세(GST)와 함께 와인균등세 또는 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함
 - 호주의 주류 과세체계는 와인과 그 외 주류(일반주류)로 이원화되어 있음
 - 와인은 종가세 방식의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WET))'를 부과하되, 일반주류는 종량세 방식의 소비세(Excise Tax, 주세)가 부과됨¹³³⁾

- 일반주류에 대한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주류의 제조업자, 수입자이며 주류의 수입 또는 인도시점에 과세됨

- 반면, 와인균등세는 와인의 최종 도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호주 내에서 제조된 와인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와인을 수입하는 시점에 과세됨¹³⁴⁾
 - 일반적으로 와인제조업자, 도매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됨

- 종량세 과세방식하의 일반주류에 대한 주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2번 조정됨
 - 세율은 알코올분 1ℓ 당 최소 2.99호주달러에서 최대 83.84호주달러에 이름

- 일반주류 중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주종과 달리 맥주는 상업성, 포장용기의 크기 및 알코올 함량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 다른 주종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맥주는 8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133) 소비세는 호주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소비되는 특정 재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음(Australian Taxation Office, 2018a, p. 1)

134)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7.

- 상업용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비상업용 맥주의 경우 상업용 시설(Brew On Premises Shops)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한하여 과세함
- 포장용기의 크기가 48 l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업소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맥주(생맥주)에 좀 더 호혜적인 세율을 적용함¹³⁵⁾
- 알코올 함량에 따라 저도주(3% 이하), 중도주(3~3.5% 이하), 고도주(3.5% 초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호주는 1984년부터 공공건강 측면에서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저지할 목적으로 저도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함¹³⁶⁾¹³⁷⁾
 - 저도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을 저도주로 유인하려고¹³⁸⁾ 하였으나 맥주 중 저도주의 판매비중은 낮은 편임¹³⁹⁾

135) 1999년 총리선거 당시 새로운 과세제도하에서(호주는 2000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 일반맥주(ordinary beer)의 가격이 1.9%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입법이 어려웠음. 이에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대용량 맥주(생맥주)에 경감세율을 도입함. 이에 대해서 합리적 명분이 없는 경감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음(Webb, 2006, p. 28)

136) Manton(2015), p. 5.

137) 1988년에 1.15% 이하의 알코올분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저도주에 대한 경감세율 규정이 삭제되었음. 2000년 7월부터 알코올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함 (Parliament of Australia, 2015, p. 9)

138) 기존 폭음자의 소비성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장 신규 진입자나 젊은 세대와 같이 사회적 친교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저도주를 선택하게끔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설계하였음

139) 2015~2016년 기준 호주 내의 전체 맥주 소비량 중 약 76%가 고도주임(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7))

〈표 IV-9〉 호주의 주류 소비세율 (단위: 호주달러(AUD)/LAL)

구분			세율	
맥주	상업적 시설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생산되는 맥주	저도주	2.99	
		중도주, 고도주	3.45	
	상업용	생맥주 (포장용기 48ℓ 초과)	저도주	8.50
			중도주	26.62
			고도주	49.50
	상업용	포장맥주 (포장용기 48ℓ 이하)	저도주	42.50
			중도주	49.50
			고도주	34.87
	브랜디			78.30
증류주(알코올분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면제대상 제외)			83.84	
기타 알코올 음료(알코올분이 10% 이하인 것)			83.84	

- 주: 1. LAL이란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알코올분 3.3%의 증류주 3,000ℓ의 과세표준은 99LAL임
 2. 맥주는 제품에 함유된 알코올분이 1.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음
 3. 증류주 중 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교육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국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음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a), pp. 12~13.

- 반면, 증가세 과세방식의 와인은 제품가격의 2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와인균등세의 과세표준은 최종 도매가격 또는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 국내 제조제품: 최종 도매가격임. 개별 거래별로 운송비를 포함하거나 매출할인 등을 차감적용할 수 있으나, 프로모션 리베이트 등 특정 서비스 대가는 차감적용되지 않음¹⁴⁰⁾
 - 수입품: 관세 과세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관세를 가산한 금액임¹⁴¹⁾

140)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2~13, pp. 18~19.

141)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 16.

- 호주는 주류제조업자 및 와인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세(와인균등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 일반 주류제조업자의 경우 기납부 소비세의 60% 상당액(연 3만호주달러 한도)을 환급받을 수 있음¹⁴²⁾
 - 기존에는 맥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그 이외의 주류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환급대상 주종을 확대함¹⁴³⁾
 - 와인제조업자의 경우 기납부한 와인균등세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만호주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¹⁴⁴⁾
 - 2018년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35만호주달러로 축소됨
- 한편, 호주에서는 현재의 주류 관련 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세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¹⁴⁵⁾
- 주류세제개혁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주류과세체제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주류(와인 포함)에 대한 단일 종량세제 도입을 제안
 - 기타 주류 관련 세제 및 면허 등의 규제 완화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 등을 제시함

14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In-detail/Refund-scheme-for-alcohol-manufacturers/>, (검색일자: 2018. 6. 11.)

143) Glenys Byrne(2017), p. 5.

14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Wine-equalisation-tax/>, (검색일자: 2018. 6. 11.)

145) 이대원(2017), pp. 6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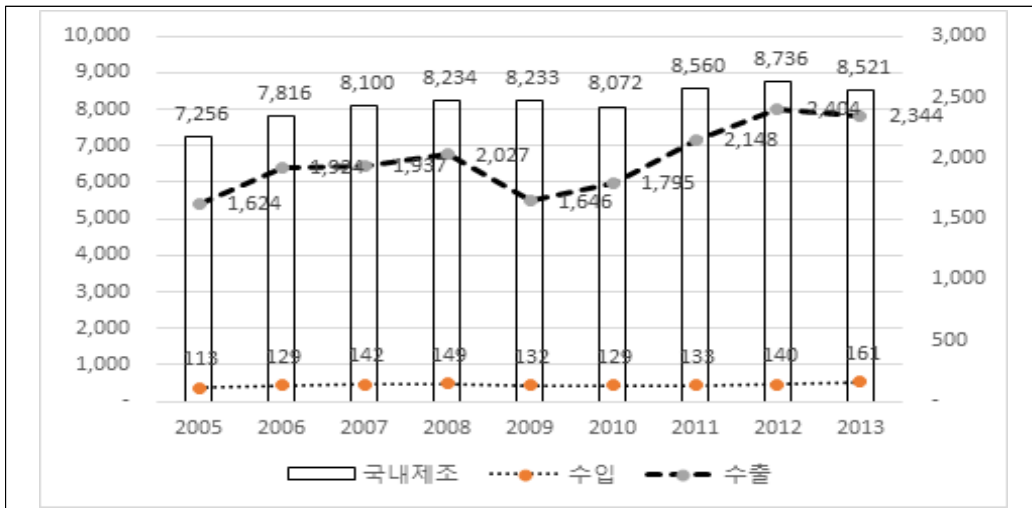
4. 멕시코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국내맥주 공급량은 633만톤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국내 공급량은 10.32% 증가함¹⁴⁶⁾¹⁴⁷⁾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726만톤, 852만톤으로 2005년 대비 국내생산량은 17.43%가 증가함
- 2005년과 2013년 기준 수출량(수입량)은 각각 162만톤(11만톤), 234만톤(16만톤)으로 2005년 대비 44.34%(42.48%) 증가함

[그림 IV-6] 멕시코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46)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47) WHO 알코올 소비량 기준으로 비공식 알코올 소비량은 3.4리터로 공식 순알코올 소비량 5.02리터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멕시코는 불법 주류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과소 보고될 수 있음(한국주류산업협회, 2014, p. 84.)

-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연평균 2%이지만, 멕시코 맥주시장의 98%는 미국·유럽계 다국적기업의 맥주회사가 점유하고 있음¹⁴⁸⁾
 - 18개의 맥주회사가 있으나 상위 2개 업체(Anheuser-Busch InBev 계열의 Grupo Modelo 57%, Heineken 계열의 FEMSA 41%)가 전체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함

나. 주세제도

-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는 16%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impuestos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가 부과됨
- 특별소비세는 1980년 종가세 방식으로 도입하였는데, 종가세 방식으로 설계된 주된 원인은 1980년대 멕시코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에서 찾을 수 있음¹⁴⁹⁾
 - 특별소비세는 주류, 맥주, 담배제품, 가솔린, 에너지 음료 및 청량 음료, 고열량 식품 등 재화나 특정 용역에 부과됨¹⁵⁰⁾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거래는 (i) 법에 명시된 품목의 멕시코 내 이전, (ii) 법에 명시된 품목의 수입 및 (iii) 법률에 명시된 용역의 제공임
 -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의 경우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단계까지 부과됨
 - 그 외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시스템에 따라 도매(wholesale) 단계까지 부과되고, 담배, 가솔린, 디젤의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 수준에서만 부과됨
 -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i) 과세대상 물품의 수출 (ii) 가공담배·가솔린 등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외의 사람에 의한 이전 (iii) 음료수(무알코올)의 판매·수입 및 판매장소에서 마개 없는 병이나 컵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소비되는 주류 (iv) 전략적 보세창고구역에 대한 재화의 공급 및 수입

148) 한국주류산업협회(2014), p. 81.

149) Giugale et al.(2001), pp. 190~191; 전병목·성명재·김우철(2017), pp. 60~61 재인용

150) <http://taxsummaries.pwc.com/ID/Mexico-Corporate-Other-taxes>(검색일자 2018. 6. 18.)

-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 주류의 수입 및 이전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 주류의 이전(transfer)은 제조원가에 컨테이너 비용, 포장 비용, 이자, 연체료, 벌금, 기타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함
 - 수입(import)주류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 납부액 등의 합계임

- 주세율은 알코올 도수의 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출고가격에 26.5%, 50%, 53%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함

〈표 IV-10〉 멕시코 주세율

(단위: %)

알코올 도수	세율(가격 기준)
ℓ 당 순알코올 14% 미만	26.5
ℓ 당 순알코올 14~20%	30
ℓ 당 순알코올 20% 초과	53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2014), p. 85.

-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계산은 종가세 방식하의 세율 26.5%를 적용한 금액을 최저한 세로 하여 리터당 정액으로 규정됨¹⁵¹⁾
 - 맥주의 수입 및 이전 시, 생산자, 보틀러 및 수입업자는 판매·수입 맥주 1ℓ 당 3 멕시코페소(MXN)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함
 - 재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판매 또는 수입한 맥주 1ℓ 당 1.26 멕시코페소(MXN)를 차감함

151) Robles(2018); <http://taxsummaries.pwc.com/ID/Mexico-Corporate-Other-taxes>, (검색 일자: 2018. 6. 8)

- 주세 납세의무자는 멕시코 내에서의 과세대상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과 법인임
 - 생산자, 포장업자(packer), 수입업자(importer)는 과세대상 주류를 판매할 때 커미션 에이전트, 브로커, 대리인, 양수인, 또는 배급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주세는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도매, 소매)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판매장에서 마개없는 병이나 컵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세됨

- 멕시코 주세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전단계 세액공제를 허용함¹⁵²⁾
 - 주세는 생산자·수입자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중간판매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 단계까지의 모든 거래과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함
 - 주세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터키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국내맥주 공급량은 89만톤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국내 공급량은 8.9% 증가함¹⁵³⁾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89만톤, 99만톤으로 2005년 대비 국내생산량은 10.81%가 증가함

152) 주류 외 재화나 용역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153)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 2005년과 2013년 기준 수출량(수입량)은 각각 8만톤(0.2만톤), 10만톤(0.3만톤)으로 2005년 대비 32.05%(50%) 증가함

□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연평균 1% 미만으로, 터키 맥주시장 대부분은 터키 국내 맥주생산자에 의해 점유됨

○ 주로 3개 국내맥주제조사(Efes Pilsen, Türk Tuborg, Mey İçki)가 국내맥주시장을 점유함¹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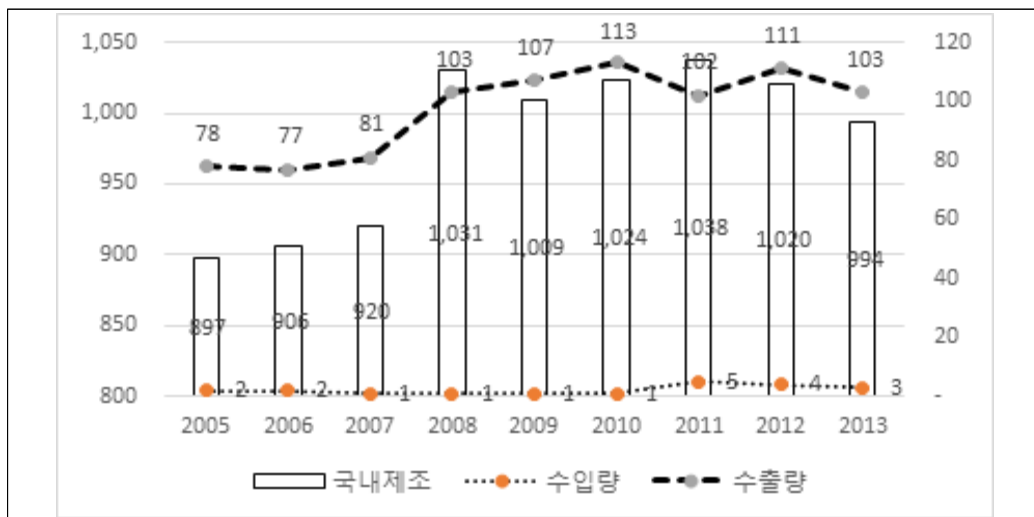
○ 터키정부는 자국 내 주류공급량을 축소하기 위해 주세 인상정책과 함께 주류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침¹⁵⁵⁾

- 2013년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함

- 이 외에도 주류 판매 촉진행사, 광고, 경품제공이 금지되고, 주류제품에 대한 라벨 정책이 도입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등의 억제정책이 시행됨

[그림 IV-7] 터키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54) Atalaysun(2013), p. 3.

155) Surrett(2015), p. 3.

나. 주세제도

- 터키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는 18%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özel tüketim vergisi , ÖTV)가 부과됨¹⁵⁶⁾
 - 기존 16개 세목으로 운영되던 소비세 제도를 단순화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로 시행됨
 - 과세대상 재화는 석유제품, 자동차·오토바이·헬리콥터·비행기·보트 및 요트, 담배제품, 주류 및 청량음료, 명품, 가전제품(냉장고 및 세탁기, 건조기 등), 비디오 레코더·텔레비전, 총기류 등이 있음
 - 특별소비세 도입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적용되었던 26%와 40%의 부가가치세율은 폐지됨
 - 주류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연계하기 위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평가·조정됨

-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이며, 재화의 수입 또는 인도 시 부과됨¹⁵⁷⁾
 - 과세대상 주류품목이 다른 재화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해당 주류에 대한 주세는 세액공제함

- 주세 도입 초기에는 종가세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알코올 함량을 고려한 최저한세 (minimum specific tax per liter of pure alcohol)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맥주 외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종량세적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남¹⁵⁸⁾
 - 맥주의 경우 종가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제품 1ℓ의 알코올 도수를 고려한 종가세 및 종량세의 특징을 고려하여 계산함

156) Yaltı (2018), p. 4.

157) The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Finance Revenue Administration(2016), p. 22.

158) 와인의 경우 종가세 부분이 2009년 세법개정 시 삭제됨

- 최저한세는 제품 1ℓ(맥주 또는 와인)의 알코올 도수 또는 제품에 포함된 순수 알코올(위스키, 보드카 등) 1ℓ 를 고려하여 적용됨

〈표 IV-11〉 터키 주세율

(단위: 터키리라)

주종	2005년(%)	2018년 1월
증류주	275.6	197.5242 (알코올 리터당)
진, 보드카	275.6	175.663(알코올 리터당)
와인	275.6	6.636 리터당
맥주	63.3	63% 또는 최저 1.3498 (리터당 알코올 도수)

주: 증류주는 위스키, 럼주, 리퀴어, 증류와인 등이 포함됨

자료: Sirtioglu(2017): <https://spirits.eu/policies/taxation-economy/key-data-1>, (검색일자: 2018. 6. 12.)

6. 중국

가. 맥주시장 현황

- 중국 맥주(보리맥주)의 생산량·수출량·수입량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2005년 대비 약 20%, 71%, 313% 증가함¹⁵⁹⁾
 - 맥주 생산량은 2005년 174,900톤에서 2013년 209,200톤으로 약 20% 증가함
 - 맥주 수출량은 2005년 6,600톤에서 2013년 11,300톤으로 71% 증가함
 - 맥주 수입량은 2005년 대비 2,300톤에서 2013년 9,500톤으로 313% 증가함
 - 통관절차가 용이하여 해외 맥주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맥주 수입금액은 2016년 기준 6억 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함¹⁶⁰⁾
 - 중국은 맥주의 국내제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2014년부터 맥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7년 현재 수입맥주가 중국 맥주시장의 15.1%를 차지함¹⁶¹⁾

159)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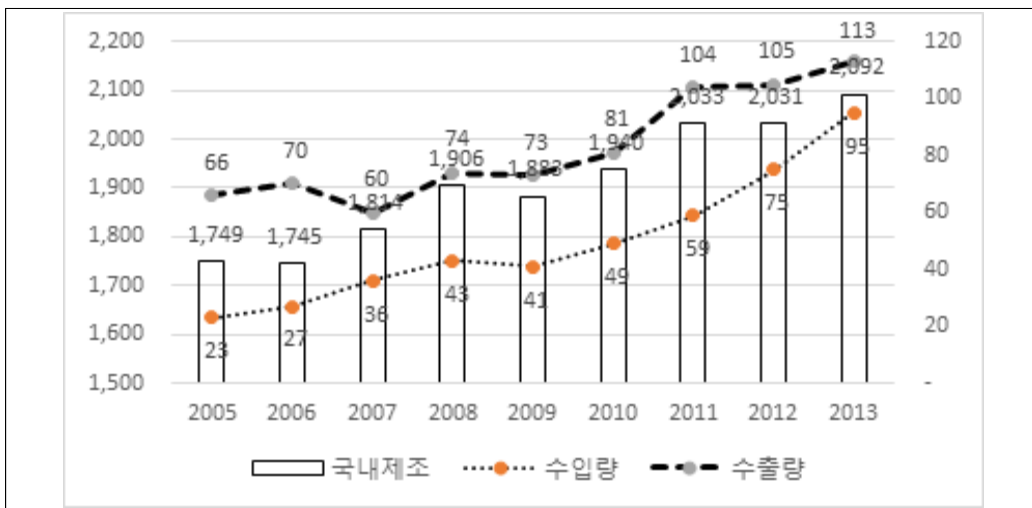
160) BNK투자증권(2018), 2016년 기준 중국의 맥주 무역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 달함

161) <http://www.chyxx.com/data/201803/618815.html>

-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맥주시장은 2014년 기준 954억 6,761만달러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면서, 10개의 글로벌 맥주제조사 중 중국 맥주회사 3개사가 포함될 정도로 맥주 생산과 소비량 규모가 방대함¹⁶²⁾
 - 중국 맥주기업 3개사의 세계 맥주시장 점유율은 12%이고, 중국 맥주의 판매량은 494억리터로 전 세계 판매량의 약 26%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내수 시장판매로 구성됨¹⁶³⁾
 - 2016년 매출액 기준 전세계 1위 맥주 브랜드는 China Resources Holdings (화룬)의 설화(쇄화, 雪花) 맥주임
 - 중국에서 1리터당 1달러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2008년부터 단일 브랜드와 중국 내수만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5%, 중국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함

[그림 IV-8] 중국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62) 중국 맥주 3개사는 China Resources Holdings, Tsingtao Brewery, Beijing Yanjing Brewery 이고, 글로벌 맥주 10개 기업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벨기에 AB Inbev, 네덜란드 Heineken, 덴마크 Carlsberg, 캐나다 Molson, 일본 Asahi, 일본 Kirin, 미국 Constellation Brands임(BNK투자증권, 2018, pp. 4~7.)

163) www.fao.org/statistics/en/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1685, (검색일자: 2018. 6. 12.)

나. 주세제도¹⁶⁴⁾

- 중국은 주류에 대한 소비세법을 1993년 12월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잠정조례 발표 이후 1994년 1월 1일자로 최초 시행함¹⁶⁵⁾
 - 1994년 최초 시행 당시 백주, 주정, 기타주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황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과함
 - 종가세: 곡물로 빚은 백주(30%), 고구마로 빚은 백주(15%), 기타주류(10%), 주정(5%)
 - 종량세: 황주(1톤당 240위안), 맥주(1톤당 220위안)¹⁶⁶⁾
 - 세무목적상 5개 주류와 주정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함¹⁶⁷⁾
 - 여기서 주류란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인 각종 주류를 의미하고¹⁶⁸⁾, 주정은 증류 또는 합성 방식으로 생산된 주정도수 95도 이상인 무색투명한 액체를 말하며 곡물로 빚은 백주(白酒), 고구마로 빚은 백주, 황주,¹⁶⁹⁾ 맥주 및 기타 주(酒)¹⁷⁰⁾로 구분함
- 2001년 5월부터 중국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백주(증류주)에 대한 전통적으로 높은 소비억제 및 전통주인 황주(발효주)와 맥주의 생산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발전 4대 방침’을 추진함^{171), 172)}

164) 현행 과세제도는 한상국(2009, pp. 225~243)과 이동필(2013, pp. 250~262)을 요약정리함

165) 당시 주류를 포함한 11개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함

166) 맥주 1톤 = 988리터, 황주 1톤 = 962리터(한상국, 2009, p. 228)

167) 중국 국세청 유권해석(關於印發〈〈消費稅征收範圍注釋〉〉的通知[部分廢止], 國稅發[1993]153號, 1993. 12. 27.)을 요약함

168) 한상국(2009), p. 229.

169) 백주는 증류주이고 황주는 발효주임

170) 맥주는 보리 또는 기타 양식을 원료로 하고 홉을 넣고 당화, 발효, 여과하여 제조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술을 말함(중국 유권해석(關於印發〈〈消費稅征收範圍注釋〉〉的通知[部分廢止], 國稅發[1993]153號, 1993-12-27))을 요약함). 기타 술은 1도 이상인 백주, 황주, 맥주 외의 술을 말하며, 기온 백주, 기타원료 백주, 토침주, 복제주, 계정주, 탄산가스를 함유한 발표성 과일주, 약주 등을 포함함. 주요성분이 맥주와 과일주스로 구성된 알코올농도가 낮은 음료인 과일맥주는 주류소비세 과세대상인 맥주에 해당함(중국 유권해석(國家稅務總局關於果啤征收消費稅的批复, 國稅函[2005]333號, 2005-04-18)을 요약함)

- 황주와 맥주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고도주인 백주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여 다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함¹⁷³⁾
 - 2001년 5월 1일부터 종가세 비례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됨
 - 종가세 : 곡물로 빚은 백주(25%), 고구마로 빚은 백주(15%), 기타주류(10%), 주정(5%)
 - 2001년 5월 1일부터 맥주에 대한 세율은 공장출고가격 및 수제맥주 여부에 따라 톤당 220위안에서 250위안을 적용함
 - 공장출고가격¹⁷⁴⁾이 톤당 3,000위안(한화 약 450,000원) 이상인 경우, 톤당 250위안(한화 약 37,500원)
 - 공장출고가격이 톤당 3,000위안 미만인 경우, 톤당 220위안(한화 약 33,000원)
 - 요식업이나 음식점에서 자체로 만든 맥주인 경우: 톤당 250위안
 - 2006년 3월 20일자로 공포된 '소비세정책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통지(재세33호, 2006. 4. 1. 시행)'에 의거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주류 소비세율이 개정됨¹⁷⁵⁾
 - 백주는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종가세와 킬로그램(또는 리터)당 1위안의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함
- 현행 주류에 대한 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중국 경내에서 소비세 과세물품을 생산, 위탁가공, 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임
- 제조·판매(자가사용 포함)하는 과세소비재는 그 과세소비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과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위탁가공하는 과세제품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탁자는 과세제품에 대한 세금을 대리징수하여 납부함

171) 주류산업 발전 4대 방침은 ①고도주 위주 생산에서 저도주 위주 생산으로 전환 ② 증류주 위주 생산에서 양조주 위주 생산으로 전환 ③ 곡물주 위주 생산에서 과실주 위주 생산으로 전환 ④ 보통주 위주 생산에서 고급주 위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임(이동필·전형진, 2009, p. 17)

172) 이동필(2013), p. 256.

173) 이동필(2013), pp. 250~262)

174) 포장물과 포장물 보증금을 포함함

175) 이동필(2013, pp. 250~262); 중국 유권해석(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調整和完善消費稅政策的通通知, 財稅[2006]33号)을 요약함

- 수입하는 과세소비재는 수입하는 법인과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관이 세금을 대리징수함

- 주류소비세 납세의무시기와 납세절차는 아래와 같음
 - 과세소비품의 생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품은 판매 시에 납세함
 - 과세소비품의 자가제조 및 자체사용: 자가제조나 자사소비하는 과세소비품을 과세소비품의 생산을 위해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납부는 면제되며,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송하여 사용시에 세금을 납부함¹⁷⁶⁾
 - 과세소비품의 위탁가공: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화물을 교부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함¹⁷⁷⁾
 - 과세소비품의 수입: 수입한 과세소비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함¹⁷⁸⁾

- 현행 중국의 주세율 과세체계는 주종별로 증가세, 종량세, 결합방식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낮은 세율 수준을 유지함
 - 2001년 5월부터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백주(증류주)에 대한 소비억제 및 전통주인 황주(발효주)와 맥주의 생산촉진을 위해 주세율 과세방식을 개편함¹⁷⁹⁾
 - 황주와 맥주는 220~250위안의 종량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백주는 증가세와 단위당 세액의 종량세 과세방식을 결합하여 적용함
 - 백주(곡물로 빻은 백주, 고구마로 빻은 백주): 20% 비례세율 + 1톤당 1위안
 - 황주: 1톤(962리터)당 240위안
 - 맥주는 공장출고가격별로 1톤(988리터)당 220위안 또는 250위안의 종량세를 적용함
 - 그 외 과세대상 주류와 주정에는 각각 10%와 5%의 세율을 적용함

176) 한상국(2009), p. 238.

177) 한상국(2009), p. 244.

178) 한상국(2009), p. 244.

179) 이동필(2013), p. 256.

〈표 IV-12〉 중국 주세율

(단위: %, 위안)

주종		증가세	증량세
백주		20	1위안
황주		-	240위안
맥주	공장출고가격 3,000위안 이상	-	250위안
	공장출고가격 3,000위안 미만	-	220위안
기타주류		10	-
주정		5	-

주: 황주 1톤은 약 962리터, 맥주 1톤은 988리터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国家税务总局令第51号公布), 第十条, 〈〈消费税税目税率表〉〉

- 증가세가 적용되는 경우, 주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판매액(매출액)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¹⁸⁰⁾
- 판매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총대가 및 가격 외 비용이며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증치세는 불포함함¹⁸¹⁾
 - 가격 외 비용은 납세자의 소득 구성여부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기타의 기금, 기금모집비, 반환이익, 교부금, 위약금(연체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임시비용, 품질보상비, 운임 및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및 기타 청구가격에 가산되는 성격의 대가를 의미함¹⁸²⁾
 - 자가사용한 경우의 판매액은 유사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의해 평가하고, 유사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과세산정가격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함¹⁸³⁾
 - 과세산정가액 = (제조원가 + 이윤) / (1 - 소비세율)
 - 수입소비재의 경우에는 아래 과세산정가격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함
 - 과세산정가액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1 - 소비세율)

180) 한상국(2009), pp. 225~243.

181) 한상국(2009), pp. 233.

182) 한상국(2009), pp. 234.

183) 한상국(2009), pp. 235.

-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 주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판매량에 대해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함¹⁸⁴⁾
 - 판매량은 과세소비재의 판매량을 말하며, 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수량이고, 위탁가공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수량을 말함
 -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이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 수량을 말함

7. 베트남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국내맥주 공급량은 1백 2십만톤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국내 공급량은 28.9% 증가함¹⁸⁵⁾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92만톤, 120만톤으로 2005년 대비 국내생산량은 30.15%가 증가함
 - 2005년과 2013년 기준 수출량(수입량)은 각각 0.2만톤(0.4만톤), 3.7만톤(2.8만톤)으로 2005년 대비 1,750%(600%) 증가함
 - 베트남 맥주시장은 주로 2개 국내맥주제조사(Sabeco와 Habeco)와 Heineken 계열의 국내자회사, Carlsberg의 국내계열사(Hue Brewery)에 의해 90% 정도 점유되고 있음¹⁸⁶⁾
 - 2015년에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2018년 중반에 발효됨에 따라 맥주 수·출입량의 증가를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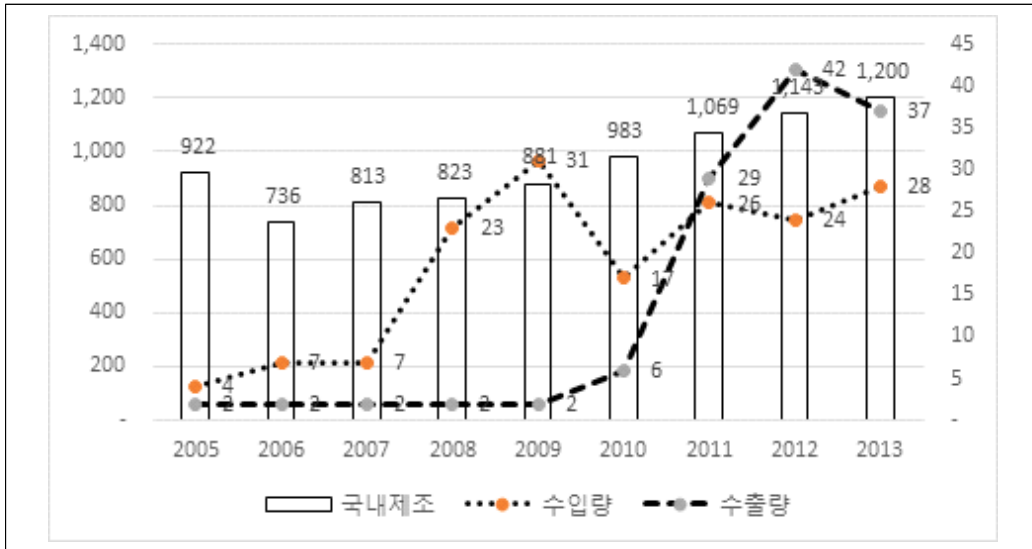
184) 한상국(2009), pp. 225~243.

185)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86) 신흥시장 투자자 협회, <http://www.emia.org/news/story/5807>, (검색일자: 2018. 6. 12.)

[그림 IV-9] 베트남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나. 주세제도

-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맥주, 와인을 포함한 모든 주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¹⁸⁷⁾
-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는 1998년 최초 도입되고 2008년 11월 세법개정 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맥주와 기타주류에 대해 종가세율을 적용함¹⁸⁸⁾
 - 개정세법은 맥주와 와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187) Grünkorn et al.(2018), p. 6; HealthBridge(2015), p. 13.

188) 당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앞두고 주세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작업(Law on Excise Tax No. 27/2008/QH12)을 수행함(HealthBridge, 2015, p. 13)

-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맥주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50%의 세율을 적용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55%, 60%, 65%의 세율을 적용함
 - 기타주류에 대한 주세는 알코올 도수별로 구분하여 20% 이하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20%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을 2012년까지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알코올 도수가 20% 이하인 경우 2016~2017년, 2018년 각각 30%,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55%, 60%, 65%의 세율이 적용됨
- 2008년 세법개정 이전 주세를 살펴보면 맥주와 주류(alcohol)로 주종을 구분하고 다시 주종 내에서 소분류하여 다른 세율을 부과함
- 1998년 「주세법」 도입부터 2008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맥주를 병맥주, 캔맥주, 드래프트 맥주(draught beer)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함
 - 1998년 기준 병맥주와 드래프트 맥주는 75%, 캔맥주는 65%, 프레쉬 맥주(fresh beer)는 50%의 세율을 적용함
 - 2003년 세법개정 시 병맥주, 캔맥주, 드래프트 맥주는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프레쉬 맥주는 30%의 세율을 적용함
 - 2005년 세법개정으로 병맥주와 캔맥주는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드래프트 맥주 등에는 30%(2008년부터는 40%의 세율)를 적용함
 - 주류는 2008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와인과 알코올 도수별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부과하였다가, 현행 알코올 도수별로 다른 종가세율을 적용함
 - 1998년 기준 약용 와인(medical wines)은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알코올 도수별 20~70%의 종가세율을 적용하였음

□ 2008년 세법개정 시 인하된 주세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세율 인상은 TPP 및 EU-베트남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표 IV-13〉 베트남 주세율 개정 연혁(1998~2018년)

(단위: %)

주종		1998년 도입		2003년 개정		2005년 개정		2008년 개정		2014년 개정	
맥주	병맥주	75		75		75		45 (2010~2012년) 50 (2013~)		55 (2016년) 60 (2017년) 65 (2018년~)	
	캔맥주	60		75		75					
	드래프트	75		75		30 (2006-2007년)					
	신선맥주	50		30		40 (2008년~)					
주류	약용 와인	15		15		20		20 미만	25	20 미만	30
	알코올 도수	20 미만	20	20 미만	20	20 미만	20	20 이상	45	20 이상	55
		30 미만	25	20 이하	30	20 이하	30				
		40 미만	55	40 미만	30	40 미만	30				
		40 이상	70	40 이상	75	40 이상	65				

주: 1. 2005년 세법개정 시 병맥주와 캔맥주의 맥주 과세표준에서 포장비를 제외함
 2. 2008년 세법개정 시 주류에 대한 세율은 2010~2012년까지 적용되고 2013년부터 5%p 인상된 세율이 적용됨
 3. 2014년 세법개정 시 알코올 도수 20% 이상인 주류에 대한 세율은 2016년(알코올 도수 20%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적용되고, 2017년에는 5%p 인상된 세율 60%가 적용, 2018년에는 다시 10%p 인상된 세율 65%(알코올 도수 20% 미만인 경우 35%)이 적용됨

자료: HealthBridge(2015), p. 14. Table 3을 재수정함

□ 주세의 과세표준(taxable base)은 제품과 수입재화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일 재화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시가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를 이용함¹⁸⁹⁾

189) Grünkorn et al.(2018), p. 5.

- 이 경우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및 환경세는 제외하지만, 관세는 포함함
- 재화의 생산, 수입, 자가소비별 가격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재화는 생산지에서 설정된 판매가격
 -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액을 합한 가액
 - 자가소비, 증여, 기부의 경우 시가

$$\text{과세표준} = \text{재화의 가격}/(1+\text{주세율})$$

- 2016년 세법개정 시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조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액출자 자회사 및 계열사 또는 중개인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함¹⁹⁰⁾
 - 주류 생산자나 수입자가 전액출자한 계열사를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주류의 가격은 계열사의 판매가액임
 - 중개인이 만일 생산자나 수입자가 결정한 주류의 고정가격에 일정한 이윤(커미션)만 가산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고정가격임
 - 국내생산 또는 수입된 주류가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과세가격은 제3자와의 평균 판매가격의 7% 이상이어야 함
 - 7%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됨
- 2018년 현재 맥주와 주류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아래와 같음
 - 맥주 65%
 - 알코올 도수 20% 미만인 주류 경우에는 35%, 20% 초과인 경우에는 65%의 세율이 적용됨

190) Nguyen et al.(2016), pp. 2~3.

- 주세 납부세액은 판매재화의 과세표준에 해당 주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체계에서의 전단계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주세 납입액,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주세 납입액, 수출을 위한 제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주세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허용됨

8. 태국

가. 맥주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국내 맥주 공급량은 204만톤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국내공급량은 27.10% 증가함¹⁹¹⁾
 - 2005년과 2013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각각 171만톤, 227만톤으로 2005년 대비 국내생산량은 33%가 증가함
 - 2005년과 2013년 기준 수출량(수입량)은 각각 14만톤(3.6만톤), 25만톤(1.7만톤)으로 2005년 대비 77.86%(-52.78%) 증가(감소)함
 - 국내맥주시장은 2개 국내제조사(Boon Rawd Brewery와 Thai Beverage)가 90% 이상 점유함¹⁹²⁾
- 태국정부는 음주억제정책, 특히 맥주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됨¹⁹³⁾
 - 주세 역시 그 음주억제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2017년 세법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주세율을 인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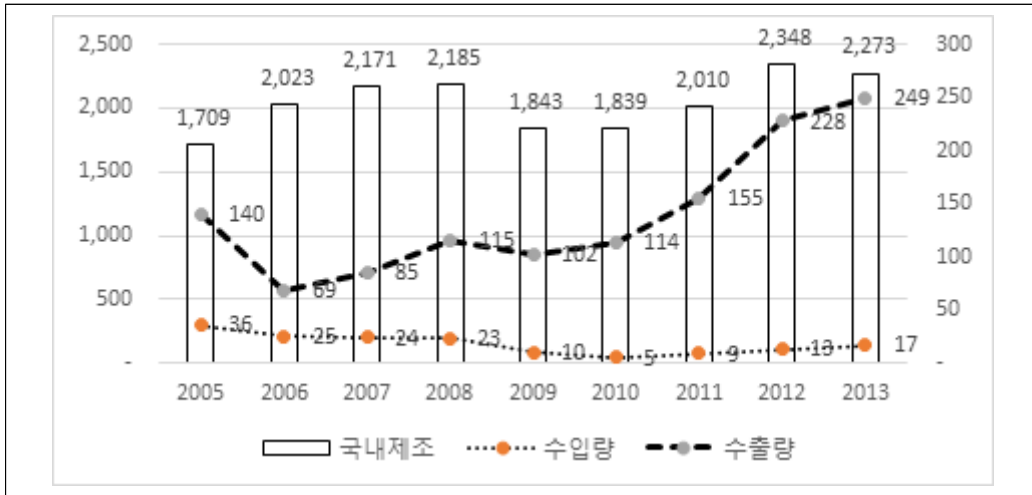
191)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192) ThaiBev vs Boon Rawd Trends of Beer Thai market. Retrieved 27 April 2018 (<http://longtunman.com/1872>, (검색일자: 2018. 6. 12.))

193)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213520&n_boardidx=117000, (검색일자: 2018. 6. 12.)

[그림 IV-10] 태국 맥주 생산·수출·수입 현황

(단위: 천톤)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나. 주세제도

- 태국에서 판매되는 맥주, 와인 등 모든 주류는 7%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¹⁹⁴⁾
 - 2017년 9월 16일부터 발효되는 특별소비세(the Excise Tax ACT B.E. 2560)는 담배세, 주세, (구) 특별소비세 등 7개 개별세목으로 규정되었던 기존 특별소비세를 통합함¹⁹⁵⁾
 -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 방식과 종량세(specific duty) 방식을 결합하여 설계됨¹⁹⁶⁾

194) Morstadt(2018), p. 8.

195) <https://home.kpmg.com/th/en/home/insights/2017/10/thailand-tax-updates-26october20170.html>, (검색일자: 2018. 6. 12.)

196) Section 16 of Excise Act B.E.2560(2017); 태국 소비세국, <http://interweb.excise.go.th/contents.php?lang=en&m=4&sub=18>, (검색일자: 2018. 5. 29.)

- 2017년 9월 16일부터 주세율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을 기존 공장출고 가격 및 CIF에서 제시소매가격(suggested retail price, SRP)으로 대체함
 - 조세회피 목적의 공장출고가격 · CIF 금액의 조작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함¹⁹⁷⁾
 - 개정 전 발효주와 증류주별, 알코올 도수별로 각기 다른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부과했던 주세율이 단순화됨¹⁹⁸⁾
 - 모든 주종에 대해서 30%의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동시에 순알코올 리터당 3,000태국바트(기타 발효주와 증류주는 1,000바트)의 종량세액을 부과함

- 현행 주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생산하는 자(industrialist)와 수입을 하는 자(importer), 용역을 제공하는 자임¹⁹⁹⁾

- 주세의 부과 시기는 주류제품을 공장에서 반출할 때, 수입된 주류에 관세가 부과될 때임²⁰⁰⁾
 - 국내제조인 경우 공장에서 제품이 반출될 때 주세가 과세되며, 제품을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시점에 과세됨
 - 수입되는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될 때 동시에 주세가 부과됨

- 종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은 제시소매가격(suggested retail price, SRP)임
 - 제시소매가격이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정상이윤을 고려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운송비와 포장비를 포함함
 - 생산자와 수입자는 제시소매가격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²⁰¹⁾

197) 비영리단체, <http://iogt.org/news/2017/08/21/thailand-excise-tax-overhaul-affects-alcohol/>, (검색일자: 2018. 6. 12.)

198) 개정 전 주세율은 전병목·성명재·김우철(2017), p. 66의 <표 III-3>을 참조할 것

199) Section 17(1) of Excise Act B.E.2560(2017)

200) Section 21 of Excise Act B.E.2560(2017)

201) Section 18 of Excise Act B.E.2560(2017)

- 신고 SRP는 표준소매가(mode price)의 95% 또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매가 최고액의 85% 이상이어야 함
- 표준소매가격은 과세당국이 수행한 조사에서 동일 분류 유형, 품질 및 수량을 가진 제품에서 일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소매가(부가가치세 제외)를 의미함

- 주세율은 종가세 방식과 종량세 방식이 결합되었는데, 우선 발효주와 증류주 모든 주종에 대해 동일하게 30%의 세율을 적용하고(종가세), 순알코올 ℓ 당 3,000태국 바트(증류주와 일부 발효주의 경우 1,000바트)를 부과함
- 태국의 경우는 저알코올 도수인 맥주에 대한 주세부담이 증류주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는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맥주에 대한 소비억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²⁰²⁾

〈표 IV-14〉 태국 주세율(2017년 9월 16일 이후)

(단위: %, 바트)

	주종	종가세율	종량세액(순알코올 ℓ)
발효주	맥주	30	3,000
	와인, 발포성 와인	30	3,000
	발효 과일음료(와인첨가)	30	3,000
	기타 발효주	30	1,000
증류주	맥주(와인)	30	1,000
	기타	30	1,000

자료: 태국 소비세국, <http://interweb.excise.go.th/contents.php?lang=en&m=4>, (검색일자: 2018. 5. 29.)

202) 증류주 소비량은 평균 27%의 비중이고, 맥주는 평균 71%의 비중을 차지함

9. 기타

□ 앞서 설명한 조사대상국 외에도 종가세 과세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은 상당수 있음
(〈표 IV-15〉 참조)²⁰³⁾

- 홍콩은 종가세 과세방식에 의해서 주세를 과세함²⁰⁴⁾
- 동남아시아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종가세 방식에 의하여 주세를 과세하며, 말레이시아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여 과세함
- 중남미에 소재하는 국가들 대부분과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 국가는 종가세 과세방식을 채택함

〈표 IV-15〉 OECD 비회원국의 주세율 제도

구분	종량세 과세방식	종가세 과세방식	결합 과세방식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¹⁾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²⁾
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베닌,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말라위, 말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토고, 우간다, 잠비아	-

주: 1) 말레이시아는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방식을 병행 결합함

2) 콜롬비아는 맥주는 종가세에 의하여 과세하나 그 외의 주류는 종량세 과세방식을 택함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2016), pp.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03) 한국주류산업협회(2016), pp. 2~7.

204) 홍콩은 2008년 2월 포도주와 맥주에 부과하던 주세를 전면 폐지함

V. 국제비교

1. 조사대상국의 주세정책 동향

- 주세정책은 공공재원의 확보 외에도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위협 음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공중보건정책의 일환으로도 이용되는 현상이 일부 조사대상국에서 발견됨
 - 터키, 베트남, 태국은 국내 주류 소비의 축소를 위해 주세 인상, 수출장려정책, 판촉 및 경품 제공 금지 등 다양한 음주억제정책을 도입함
 - 일본은 유통단계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소매단계의 맥주 판촉행위를 금지하여 맥주가격을 일정 수준(최종판매원가)으로 유지토록 규정함
 - 유럽은 국경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 소비 규제정책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알코올 수준별 차등과세(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나 주세부가세 부과(룩셈부르크, 프랑스), 주세율 인상(라트비아), 최저가격제도 시행(스코틀랜드) 등 국가별로 주세의 교정세 기능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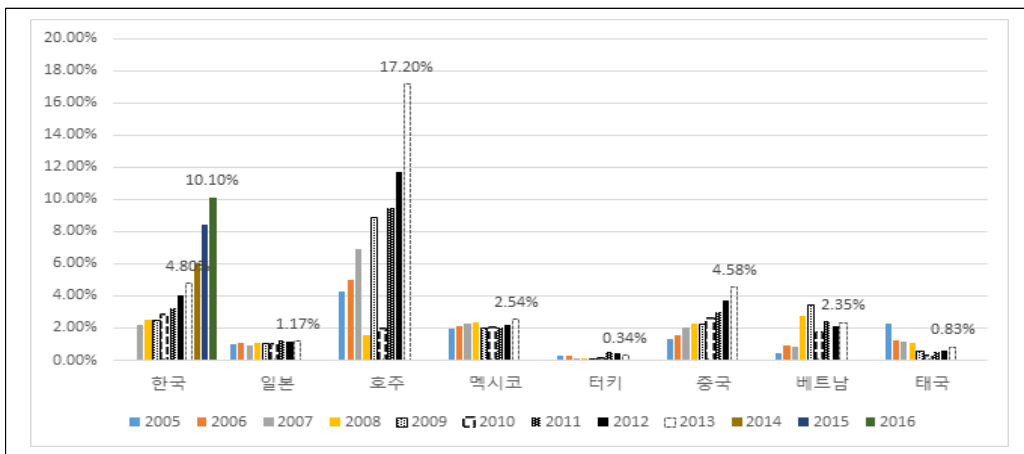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에는 맥주산업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소비되었는 데 반하여, 각 국가별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로 인한 글로벌 맥주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 결과,²⁰⁵⁾ 국가별 수입맥주 점유비율이 일부 확대됨을 살펴볼 수 있음
 - 한국은 2016년 현재 10.1%로 가장 높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호주, 중국의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각각 2013년 기준 17.2%, 4.58%로 성장하고 있음

205) BNK투자증권(2018), p. 6.

- 중국은 2014년부터 맥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수입맥주가 중국 맥주시장의 15.1%를 차지함²⁰⁶⁾

- 한편 국가별 수입맥주 소비증가는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무관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도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됨

[그림 V-1] 조사대상국별 수입맥주 시장점유 현황(2005~2013년)



주: 1. 한국은 2007~2016년 대상, 조사대상국은 2005년~2013년을 대상으로 함
 2. 중국은 대상연도 이후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5.1%의 점유율을 보임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 내부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 이와 같은 수입주류의 가격인하와 그에 따른 음주소비량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세율인상이 일부 조사국에서도 발견됨
 - 일본은 EU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무관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와인 등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 베트남은 2008년 세법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EU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하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주세율을 인상함

206) 중국정보산업네트워크, <http://www.chyxx.com/data/201803/618815.html>, (검색일자: 2018. 6. 20.)

2. 주세율 과세체계

- 조사대상국가 중 과세대상 주류에 대해 과세방식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
 - 국가의 주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음주 소비의 억제나 사치재에 대한 누진도 강화, 산업보호 측면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주종별로 서로 다른 과세체계 및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고도주인 백주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백주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주세를 적용함
 - EU 회원국은 자산가 또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명품 주류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량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제 누진도를 강화함
 - 포도주 생산국을 중심으로 일부 EU 회원국은 자국의 포도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도주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도 함²⁰⁷⁾
- 한편 종량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조사대상국가 중 대부분은 순수한 균일과세의 종량세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알코올 함량과 품질에 기반을 둔 해당 주류의 가치를 고려한 종가세 과세방식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판단됨

가. 과세방식

- 조사대상국은 모든 주류에 대한 과세방식은 동일하게 취하면서 세율결정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주종별 과세방식은 물론 세율결정도 각각 달리 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국가별로 주류소비통제, 소득재분배, 외부불경제의 조정, 대중주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주세정책 결정 시 고려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207)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스페인,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포도주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지 않음 (〈부록〉 참조)

- 한편, 동일 주종 내에서 국산재와 수입재 사이의 주세율 과세방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 이는 WTO의 차별금지 원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임²⁰⁸⁾
 - 동일 주종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질하지 않거나 경쟁대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세율이나 과세체계의 차등화는 가능하지만, 그 차이는 최소 허용수준(de minimis) 내에 있어야 함²⁰⁹⁾

- 우선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일본과 베트남, 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균일과세 방식에 의하여 주세를 과세함
 - 일본은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베트남은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함
 - 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되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방식을 적용함

- EU, 호주, 태국, 중국은 주종별로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종량세, 종가세, 단일과세, 그리고 앞서 과세방식을 병행하여 결합하는 과세방식을 각각 취하고 있음
 - EU는 맥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는 종량세 과세방식을, 와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과세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호주는 와인은 종가세 방식, 그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함
 - 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방식을 병행 결합하여 적용함
 - 중국은 주종별로 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 과세방식을 각각 적용함
 - 전통주인 백주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방식을 결합하여 적용하지만, 황주

208) 수입재가 동종제품인 경우에는 국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고, 국산재와 수입재가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 비차별적 시장접근(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원칙을 보장해야 함(성명재·장근호, 1999, p. 35)

209) 국산재와 수입재 간 세율 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격차를 허용하는 경우, 최소허용수준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성명재·장근호, 1999, p. 34)

와 맥주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주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함

- 멕시코와 터키는 맥주에 대해서는 이원 결합방식(ASF 결합방식)을 적용하고, 그 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과세방식을 적용함
 - 멕시코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되, 맥주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액을 최저한세로 한 단일과세 방식을 적용함
 - 터키는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되, 맥주에 대해서만 종량세액을 최저한세로 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함

〈표 V-1〉 주종별 과세방식 비교

구분	대상 국가
종가세	베트남, 중국(기타주류), 멕시코(맥주 외 주류), 호주(와인), 한국 ¹⁾
종량세	EU ²⁾ (맥주, 증류주), 일본, 중국(황주, 맥주), 터키(맥주 외 주류), 호주(맥주, 기타)
단일과세	EU(와인 및 중간생산물)
병행 결합과세	중국(맥주), 태국
이원 결합과세	멕시코(맥주), 터키(맥주)

주: 1) 한국의 경우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가 적용됨
 2) EU는 EU 지침상 내용을 반영함

- 맥주에 대한 조사대상국의 과세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종가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베트남과 한국이고, 종량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EU, 일본, 중국, 호주가 있음
 - 태국은 종가세와 종량세의 병행 결합과세 방식을 선택함
 - 멕시코는 출고가격의 26.5%를 최저한세로 하여 맥주 리터당 고정세액을 적용하는 이원 결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터키는 종량세액을 최저한세로 하는 종가세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이원 결합방식을 선택함

〈표 V-2〉 맥주 과세방식 비교

구분	대상 국가
증가세	베트남, 한국
종량세	EU, 일본, 중국, 호주
단일과세	해당사항 없음
병행 결합과세	태국
이원 결합과세 ¹⁾	멕시코, 터키

주: 1) 멕시코는 출고가가격의 26.5%를 최저한세로 하여 맥주 리터당 고정세액의 단일과세 방식을 결합한 과세방식이고, 터키는 종량세액을 최저한세로 하는 증가세 과세방식을 결합함

- 한편, 종량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국가 모두 균일과세의 종량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주류의 가치가 고려된 증가세 과세방식이 일부 가미 되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EU(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 일본, 호주는 알코올 함량별로 차등적인 종량세액을 과세하는데, 알코올 도수가 높고 품질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으므로 해당 주류의 가치(또는 판매가)를 고려하여 과세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중국은 종량세 과세방식이지만,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차등 종량세율을 부과함

나. 세율

- 조사대상국 중 멕시코는 모든 주류(맥주 제외)에 대해서 리터당 순알코올 함량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나, 그 외의 국가는 주종을 세분하고 주종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함
 - 멕시코는 주종을 세분하지 않고, 리터당 순알코올 함량에 따라 주류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함
 - 리터당 순알코올 함량에 따라 26.5%, 50%, 53%의 증가세율을 적용함

- 그 외 조사대상국과 한국은 주종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호주는 주류의 분류가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하여 세분화됨
 - EU는 맥주, 와인, 중간생산물, 증류주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함
 - 한국은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구분하고 다시 8종²¹⁰⁾으로 세분하여 최저 5%, 10%, 30%, 최고 7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
 - 일본은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구분하고 다시 18종으로 세분화하여 최저 2만엔에서 최고 37만엔의 세액을 부과함
 - 호주는 맥주, 브랜드, 증류주, 기타주류로 구분한 후 11종으로 세분하여 최저 2.99호주달러에서 최고 83.84호주달러의 세액을 부과함
 - 그 외의 국가는 주종의 구분이 비교적 단순함

- 조사대상국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주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조사대상국 모두 일반적으로 다른 주종에 비하여 알코올 함량이 높은 증류주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함
 - EU의 경우 증류주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비층이 선호하는 고가주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누진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은 저도주인 맥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맥주가 각 국가의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수입확보 및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국은 맥주에 증류주와 동일한 최고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맥주에 청주, 과실주, 일부 증류주류(알코올분 21도 미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 베트남은 맥주에 최고세율을 적용함
 - 알코올 도수가 20도 이상인 맥주 이외의 주류에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동일함

210) 주류를 정의할 때 주종은 총 12종류이나, 주세율 측면에서 보면 총 8종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 태국은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이 증류주의 종량세율보다 높음
 - 맥주의 종량세율은 증류주의 3배에 달함

- 맥주에 대한 세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은 맥주를 단일 세율로 과세하나, 일본, 호주, 중국은 맥주를 각각의 기준으로 세분하고 다시 세분된 맥주류 내에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한국, 멕시코, 터키, 베트남은 맥주를 단일세율로 과세함
 - 일본은 맥주류를 맥아비율에 따라 맥주, 발포주, 기타발포성주류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로 종량세율을 달리 적용함
 - 그러나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일본 국내맥주의 수출장려 및 시장경쟁왜곡에 따른 세수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맥주류의 주세율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일원화할 예정임
 - 호주는 맥주를 상업성, 포장용기의 크기 및 알코올 함량에 따라 8개로 세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공공건강 측면에서 주류시장 신규 진입자를 저도주로 유인할 목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함
 - 포장용기의 크기에 따른 구분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로 평가됨
 - 중국은 맥주에 대해 공장제조의 출고가격별로 세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EU 회원국은 대부분 단일세율로 과세하나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 알코올 도수별로 종량세율을 달리 정함

- 증류주의 세율을 보면 한국, 중국, 태국은 증류주에 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그 외의 국가는 증류주를 세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함
 - 한국, 중국, 태국은 증류주를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 단일세율을 적용함
 - 멕시코, 베트남은 증류주를 다른 주종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알코올 함량에 따라 각 3단계 또는 2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일본, 호주, 터키는 증류주를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기 세율을 달리 적용함
 - 일본은 증류주를 크게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준세율을 달리 적용함. 또한 하나의 항목 내에서도 알코올분이 기준세율에 적용되는 알코올분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증과세율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호주는 증류주를 브랜드와 그 외의 증류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단일세율을 적용함
 - 터키는 증류주를 진·보드카와 그 외의 증류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단일세율을 적용함

다. 납세의무자

- 멕시코와 터키, 호주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주세 납세의무자를 일반적으로 주류의 제조업자(생산자)와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의 수입 또는 출하, 이전, 인도시점에 주세가 과세됨
- 멕시코, 터키, 호주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제조업자와 수입자 외 판매자를 고려함
 - 멕시코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멕시코 내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도·소매)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부과됨
 - 주세에 대해 전단계 세액공제를 허용함
 - 호주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주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와인은 예외적으로 최종 도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으로 와인 제조업자, 도매업자 및 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임
 - 터키의 경우 주류의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로 주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함

라. 맥주 주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기준

- 조사대상국 중 한국, 베트남은 국내제조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주류는 모두 CIF 금액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 국내제조맥주에 대해서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제조업자의 이윤 등을 감안한 제조장 출고가격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함
 - 베트남은 국내제조맥주에 대해 생산지에서 설정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계열사를 이용한 주류 판매 시에는 계열사의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

- 조사대상국 중 호주, EU는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일본, 멕시코 등은 판매되는 주류의 용량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함
 - 호주와 EU는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종량세 과세표준으로 함
 - 일본, 중국은 주류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결합과세

- 멕시코는 주류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최저한세 계산 시 주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 국내제조인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컨테이너 비용, 포장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평가액임
 - 수입인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 납부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 터키는 주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최저세액 계산 시 알코올 함량을 고려한 종량세액을 기준으로 함
- 태국은 종량세와 종가법을 병행 결합한 주세제도로써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시소매 가격과 리터당 순알코올임
 - 태국은 종가세 방식의 과세표준은 당초 공장출고가격 및 CIF 금액이었으나, 2017년 9월 16일부터 제시소매가격(SRP)으로 개정함
 - 제시소매가격이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정상이윤을 고려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종량세 방식의 과세표준은 리터당 순알코올 함량임

〈표 V-3〉 맥주 주세 과세표준 비교

구분	주류가격		알코올 함량	용량
	국내제조	수입		
한국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제조업자의 이윤 등을 감안한 제조장 출고가격	CIF 금액+관세 등	-	-
EU	-	-	○	-
일본	-	-	-	○
호주	-	-	○	
멕시코	제조원가+컨테이너 비용+포장 비용 등	CIF 금액+관세 등	-	○
터키	-	-	○	-
중국	-	-	-	○
베트남 ¹⁾	생산지에서 설정된 판매가격	관세의 과세표준+관세 등	-	-
태국 ²⁾	제시소매가격	제시소매가격	○	-

주: 1) 베트남은 계열사를 통한 판매의 경우, 계열사의 판매가격임
 2) 태국의 제시소매가격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운송비와 포장비, 정상이윤을 고려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자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European Commission(2018); 일본 「주세법」 제23조;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2~13);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539号)第七条, 第九条; Grünkorn et al.(2018); Section 18 of Excise Act B. E. 2560(2017)

3. 소결

- 본문에서는 조사대상국가의 주세율 과세방식에 대한 최근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주세율 과세방식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 첫째, 일반소비세의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동일한 범주로 묶어두고 그 기반에서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각 세목이 갖는 본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담배세 과세방식의 전환과 같이 주세에서 기대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음
- 둘째,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수입, 공중보건의 확보 외에도 소비자 후생 증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 시장경쟁의 공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류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인하가 진행됨
 -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가격인하는 음주 증가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고, 과거에 미비했던 시장경쟁에서의 불공정한 측면이 확대될 수 있음²¹¹⁾
 - 그러므로 주세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함
- 셋째, 주류제품의 다양화를 이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고려한 주세율의 개선이 요구됨

211) 최근까지 보고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5천억원~20조원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있으며, 이는 주세 수입의 3.0배~6.3배 수준임(이선미 외(2015, p. 546); 정영호 외(2012, p. 33); 이선미 외(2008, p. 210) 등)

- 수입시장의 확대와 소비자기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류제품이 소개되는데, 구성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종으로 전환할 여지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일본은 맥주의 정의를 개정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던 발포맥주를 맥주로 과세함
- 마지막으로, 주세율 과세제도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의 경감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EU는 회원국 간 다양한 주세율 체계로 인한 조세회피와 세율인하 경쟁을 방지하고자 주종별 최저한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1992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가 2006년 기준 30% 정도 하락하였다고 평가됨
 - 일부 EU 회원국들은 종량세 방식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가연동제를 적용함²¹²⁾
 -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연동제를 적용한 종량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동제를 미도입한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은 일정 주기별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212) 성명재(2017), pp. 90~92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와인 등 수입주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점
업금지’ 폐지 등 주류수입업 면허제도 개선」, 보도자료, 2011. 12. 5.
- _____,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2012년 물가안정책
임관회의, 2012. 8. 29.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 주류시장 현황 및 주세법 개정영향』,
2017. 12.
-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백진욱, 『주류정책의 국가 간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9. 8.
- 서울경제, 『서울경제』, 「유통 빅3발 ‘수입맥주 대전」, 2016. 6. 20일자 뉴스,
<http://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KXNWOJYR5>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용역보고서, 공정거
래위원회, 2016.
-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 회계, 2007.
- 성명재, 『주류시장 여건과 주세 부과체계』, 한국재정학회, 2017.
- 성명재·장근호,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

- 이대원, 「주류과세제도 개혁」, 『KIPA News Letter 규제 동향지』, 2017년 가을호, 한국행정연구원, 2017. pp. 67~70.
- 이동필,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연구총서 S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이동필·전형진, 『중국 절강성 소흥주산업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이선미·윤영덕·백종환·현경래·강하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 이선미·정우진·김일순·김한중·조우현·신의철·안상훈·한광협·명재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정의학회지』 제200권 제29호, 2008, pp. 201~212.
- 이준규, 「주세체계의 개편방안 - 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265~338.
- 이준규·송은주, 「주세체계의 개편방안-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전널』 18권3호, 한국세무학회, 2017.
- 전병목·성명재·김우철,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 법령 개선방안』,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정영호·고숙자·최은진·최영철·김은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 정영호·고숙자·김광기·이해국·정슬기·최영철·김대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음주감소 전략연구」, 『정책보고서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지성태·이현근·이수환, 「한·EU FTA 발표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10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조선일보, 『조선비즈』, 「롯데마트, 반값 수입맥주인 'L맥주 출시」, 2012. 10. 16일자 뉴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2802.html (검색일자 2018. 7. 17.)
- 조흥준·김명희·김보경·손수인·이용, 『근거 기반의 음주량 감소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재정경제부, 『酒稅率 調整과 有關한 報 道 參 考 資 料』, 1999.
- 최우석·이경화, 「스페셜 리포트: 맥주시장 경쟁심화, 그 원인 및 대응에 따른 맥주 생산기업의 신용위험 변화」, 나이스신용평가(주), 2018. 2. 28.

- 한국소비자원, 『[FTA 신규체결국] 중국 주요 수입소비재 유통실태 조사 [가전제품·맥주시장 중심]』, 2016.
- 한국주류산업협회, 「멕시코 주류시장 동향」, 『해외시장동향』, 2014년 봄호, 2014.
- _____, 「전세계 주세율 증가세 체제국가」, 2016. 9.
- _____, 「기업별 경영공사자료, 업체별 자체조사」 내부자료.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현진권·성명재, 「소비세제의 변천과정」, 『한국세제사 - 소비과세·관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BNK투자증권, 『음식료 산업리포트 2018/3/7』, 2018.

2. 국외문헌

- Atalaysun, Meliha, “Alcoholic Beverages Sector Report-Turkey,”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pparent Consumption of Alcohol, Australia, 2015~16,” 2017.9.
- Australian Taxation Office, “Excise and excise equivalent goods,” 2018a.
- _____, “Wine equalisation tax,” 2018b.
- Barbor, Thomas F, Caetano, Raul, Casswell, Sally, Edwards Griffith, Grube, Joel W. and Norman Giesbrecht, *Alcohol: No Ordinary Commodity: Research and Public Policy*, OUP Oxford, 2010.
- Byrne, Glenys, “2018-19 Budget: Pre-budget Submission Title: Australian Government Alcohol Taxation”, The Treasury of Australian Government, 2017.
- Cnossen, S., “Tax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758, 2002.
-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Part I-Alcoholic Beverages,” 2018;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excise_duties/index_en.htm

- Gould E and N. Schacter,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alcohol policy", SAIS Review 22:119 - 39, 2002.
- Grünkorn, Wolfram, Nguyen, Tran Ngoc Diem and Thi Quynh Nhu Nguyen, "Vietnam - Corporate Taxation sec. 14.," Country Analyses, IBFD, 2018.
- HealthBridge, *Alcohol taxation and price policies in Vietnam and in the world*, Literature Review, 2015.
- Giugale, Marcelo M., Lafourcade, Oliver, and Nguyen, Vinh H., *Mexico, A Comprehensive Development Agenda for the New Era*, Washington, DC: World Bank. 2001.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300371468774563671/Mexico-a-comprehensive-development-agenda-for-the-new-era>
- Manton, Elizabeth,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changes in taxation of different alcoholic beverages," 2015.7.
- Morstadt, T., "Thai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3.," Country Analyses, IBFD, 2018.
- Nguyen, Huong, Vo, Kiet and Benjamin Petlock, *Changes to Special Consumption Tax on Alcoholic Beverages(9/27/2016)*,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6.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 Oh, Sangyong, *Beer Market Repor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6.
- Omura, Makiko,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Alcoholic Beverage Trends and Alcohol Demand in Japan", 2014;
http://ageconsearch.umn.edu/record/170487/files/Makiko_Omura_AES_confe_finaldraft.pdf
- Otsuka, Masayuki, *Liquor Tax Reform Japan(4/9/2018)*,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8.
- Parliament of Australia, "Alcohol taxation in Australia(Report no. 03/2015)", 2015.10.

- Rabinovich, Lila, Brutscher, Philipp-Bastian, de Vries, Han, Tiessen, Jan, Clift, Jack and Anais Reding, *The Affordability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European Union: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Alcohol Affordability, Consumption and Harms*, Cambridge: Rand Corporation, 2009.
- Richupan, Somchai, *Alcohol Products Taxation: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Selected Practices in Asia*, Siam Development Institute, 2005; http://apapaonline.org/data/Regional_Data/Other/International_Alcohol_Taxation.pdf
- Robles, A., "Mexico - Corporate Taxation sec. 14.," Country Analyses, IBFD, 2018.
- Sirtioglu, Ibrahim, *Alcohol Consumption Taxes Continue to Climb in Turkey*,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7.
- Smith, S., *Economic issues in alcohol taxation. In: Cnossen S, editor. Theory and practice of excise taxation: smoking, drinking, gambling, polluting, and driv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ornpaisarn, B., Shield, Kevin D., Esa, Österberg and Jürgen Rehm (ed), *Resource Tool on Alcohol Taxation and Pricing Polic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http://www.who.int/iris/handle/10665/255795>.
- Stockwell, Tim and Gerald Thomas, *Is alcohol too cheap in the UK? The case for setting a Minimum Unit Price for alcohol*, An Institute of Alcohol Studies report, 2013.
- Surrett, Jasper, *Alcohol Legislation and Taxes in Turkey*,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5.
- The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Finance Revenue Administration, "Turkish Taxation system," 2016.
- Trasberg, Viktor, "Alcohol Excise Duties in the European Union", *Estonian Discussions on Economic Policy*, Vol. 23, No. 2,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709093>.
- Webb, Richard, "Excise taxation: developments since the mid-1990s," 2006. 4.

- WHO,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administra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 _____,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2014.
- Yaltı, B., “Turkey - Corporate Taxation sec. 14.,” Country Analyses, IBFD, 2018.

- 國稅廳 統計情報, “酒稅課稅狀況”, 2016.
- 日本國稅廳, 「酒のしおり」, 2016.
- _____, “酒稅法等の改正のあらまし”, 2017.4.
- 柴田忠, “酒稅法の改正(その1)”, 日本釀造協會誌 84(4), 1989a.
- _____, “酒稅法の改正(その2)”, 日本釀造協會誌 84(5), 1989b.

3. 웹사이트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국세청 국세통계, <http://stats.nts.go.kr/>
- 법제처, <http://www.law.go.kr>
- 비영리단체 IOGT International, <http://iogt.org>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 스코틀랜드 정부부처, <https://www.mygov.scot/>
- 신흥시장 투자자 협회, <http://www.emia.org/>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경제 전문 미디어, <http://www.pressm.kr>
- 유럽연합(EU), <https://ec.europa.eu>
-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FAOSTAT), www.fao.org/statistics/en
- 중국정보산업네트워크, <http://www.chyxx.com>
- 코트라, <https://kotra.or.kr>

태국 소비세국, <http://interweb.excise.go.th>

태국 인터넷 뉴스, <http://longtunman.com>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01/index.jsp>(RJAT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service/pub/IntroServlet>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e), <http://stat.kita.net/>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FTA Korea, <http://www.fta.go.kr/>

KPMG, <https://home.kpmg.com/>

PWC, <http://taxsummaries.pwc.com/>

Spirits Europe, <https://spirits.eu/>

4. 법령

「국세기본법」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일본 「주세법」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스코틀랜드 Alcohol(Minimum Pricing)(Scotland) Act 2012.

중국 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

태국 Excise Act B.E.2560(2017)

〈부록〉 EU 회원국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 for alcoholic beverages) 표준세율

(단위: 100ℓ, 유로, %)

국가	맥주		포도주		발효주 제외 (맥주, 포도주 제외)		중간생산물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부가 가치세
	맥아증 당	알코올 도수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EU 최저한세	0.748	1.87	0	0	0	0	45	45	550	-
오스트리아	2	-	0	100	0	100	80	100	1,200	20
벨기에	2.0043	-	74.9086	256.3223	74.9086	256.3223	157.7792	256.0948	2,992.7928	21
불가리아	0.7669	-	0	0	0	0	46.017	46.017	562.4297	20
키프로스	-	6	0	0	0	0	45	45	956.82	19
체코	1.231	-	0	90.0173	0	90.0173	90.0173	90.0173	1,096.3647	21
독일	0.787	-	0	136	0	136	153	0	1,303	19
덴마크	-	7.5277	156.0106	201.0266	156.0106	201.0266	208.9548	253.9708	2,015.6416	25
에스토니아 ¹⁾	-	15.52	208.9548/ 156.0106	253.9708/ 201.0266	123.18	123.18	263.03	263.03	2,389	20
그리스	5	-	20	20	20	20	102	102	2,450	24
스페인 ²⁾	0.91	2.75~13.56	0	0	0	0	102	102	2,450	21
핀란드	-	35.55	383	383	383	383	718	718	4,785	24
프랑스 ³⁾	-	7.42	38.3	38.3	38.3	38.3	718	718	4,785	20
크로아티아	-	5.3355	0	0	0	0	106.7094	106.7094	706.9494	25
헝가리	-	5.2016	0	52.8513	31.6915	52.8513	81.9419	81.9419	1,070.463	27

국가	맥주		포도주		발효주 (맥주, 포도주 제외)		증강생산물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부가 가치세
	맥아즙 당 알코올 당수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아일랜드 ⁴⁾	-	22.55	484.84/ 616.45	849.63	309.84/ 424.84	619.7/ 849.68	616.45	849.68	4,257	23
이탈리아	3.02	-	0	0	0	0	88.67	88.67	1,035.52	22
리투아니아	-	7.11	164.67	164.67	164.67	164.67	264.52	264.52	1,666.04	21
룩셈부르크 ⁵⁾	0.7933	-	0	0	0	0	66.9313	66.9313	1,041.1528	17
라트비아 ⁶⁾	-	4.5	78	78	78	78	130	130	1,450	21
몰타	1.93	20.5	20.5	2	2	152	152	152	1,360	18
네덜란드 ⁷⁾	8.83~ 47.48	-	88.3	88.3	88.3	88.3	149.3	149.3	1,686	21
폴란드 ⁸⁾	1.8061	-	36.6317	36.6317	22.4891/ 36.6317	22.4891/ 36.6317	73.7272	73.7272	1,322.452	23
포르투갈 ⁹⁾	10.44~ 29.3	-	0	0	10.44	10.44	76.1	0	1,386.93	23
루마니아	0.7193	-	0	10.3274	86.499	86.499	86.499	86.499	720.8204	19
스웨덴	-	21.0296	272.5522	272.5522	272.5522	272.5522	570.4024	570.4024	5,378.0647	25
슬로베니아	-	12.1	0	0	0	0	132	132	1,320	22
슬로바키아	-	3.587	0	0	0	79.65	84.24	84.24	1,080	20
영국 ¹⁰⁾	-	21.5788 /28.014	326.4533	418.1407	0	0	435.2183	0	3,250.3958	20

주: 1. 적용 환율은 각각 다음과 같음: 불가리아(BGN)-1.9558; 크로아티아(HRK)-7.497; 체코(CZK)-25.995; 덴마크(DKK)-7.4418; 헝가리(HUF)-311.44; 폴란드(HUF)-4.3132; 루마니아(RON)-4.5878; 스웨덴(SEK)-9.6055; 영국(GBP)-0.8842

2. 중간생산물은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1.2%를 초과하되, 22%를 넘지 않는 주류(CN 코드 2204, 2205, 2206)를 말함. Port wine이나 Sherry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3. 에틸알코올이란 알코올 함량 기준으로 1.2%를 초과하고 CN 코드 2207, 2208에 속하는 주류 또는 알코올 함량 22%를 초과하며 CN 코드 2204, 2205, 2206에 속하는 주류를 말함
 - 1) 에스토니아는 포도주의 도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156.0106유로 또는 201.02666유로(발포포도주), 최대 208.9548유로 또는 253.9708유로(발포포도주)를 부과함
 - 2) 스페인은 맥주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2.75유로에서 최대 13.56유로를 부과함
 - 3) 프랑스는 순알코올(pure alcohol) 1/10ℓ 당 11유로가 추가로 부과됨. 프랑스 이외 해외에서 생산된 특정조건하의 럼(Rum)의 경우 100ℓ 당 869.27유로가 부과됨
 - 4) 아일랜드는 포도주의 도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484.84유로 또는 616.45유로를 부과함. 발효주의 경우에는 Cider와 Perry인 경우와 그 외로 구분, 2단계로 과세함
 - 5) 룩셈부르크는 맥주, 포도주, 발효주 등 알코올 음료의 혼합제품에 대해서는 100ℓ 당 600유로의 추가세금이 부과됨. 포도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4%로 경감됨
 - 6) 라트비아는 2020년까지 주세를 최대 8.1유로(맥주), 111유로(포도주, 발효주, 중간생산), 2,025유로(에틸알코올)까지 인상예정임
 - 7) 네덜란드는 맥주의 맥아즙 당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8.83유로에서 최대 47.48유로를 부과함
 - 8) 폴란드는 발효주의 경우에는 Cider와 Perry인 경우와 그 외로 구분, 2단계로 과세함
 - 9) 포르투갈은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맥아즙 당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10.44유로에서 최대 29.3유로를 부과함. 마테이라섬에서 생산된 리큐어(중간생산물)인 경우에는 38.05유로를 적용하고 에틸알코올의 경우에는 1,237.58유로를 적용함
 - 10) 영국은 맥주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21.5788유로 또는 28.014유로를 부과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Part I-Alcoholic Beverages, 2018;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excise_duties/index_en.htm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2018년 6월 26일 인쇄
2018년 6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